

2019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구보고서

# [청소년]과 [주거권]의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의 현재와 대안탐색 만남





2019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구보고서

---

## [청소년]과 [주거권]의 만남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의 현재와 대안탐색

---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청소년”의 범주는 10대 중반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정책별로 적용 대상 연령이 상이하야 이는 별도로 표기함.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_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목 차

I. 들어가며 왜 청소년 주거권을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	7
II. 한국의 청소년 주거지원정책 .....	10
1. 주거지원정책 .....	10
2. 요보호아동 주거지원정책 .....	30
3. 탈가정 위기청소년 주거지원정책 .....	38
4. 성범죄피해 청소년 주거지원정책 .....	49
5. 소년보호 종료 후의 주거지원정책 .....	51
6. 소결 : 한국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에 던져야 할 질문들 .....	56
III. 해외의 청소년 주거지원정책 .....	61
1. 개요 .....	61
2. 주거지원 정책 .....	68
3. 주거급여 .....	79
4. 요보호아동을 위한 주거 .....	81
5. 정리 .....	84
IV. ‘이미’와 ‘아직’ 사이 : 청소년 주거권 현장연구 .....	85
1. 들어가며 .....	85
2. 변화된 환경과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시설의 고민과 응답 .....	89
3. 시설의 경계 안팎에서 주거와 자립의 길 찾기 .....	105
V. 결론 및 제언 .....	123
별첨. [토론문] .....	125

# 표 · 그림목차

## [표목차]

[표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11
[표2]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상한금액 .....	11
[표3] 공공임대주택 개요 .....	17
[표4] 긴급복지 주거비용 지급 상한액 .....	24
[표5] 주거취약계층 지원 기준 .....	28
[표6]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대상 .....	28
[표7]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	31
[표8] 보호 연장사유 .....	32
[표9] 자립지원시설 운영 현황 .....	34
[표10]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	39
[표11]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서비스 .....	41
[표1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법 .....	42
[표1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	44
[표1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	44
[표15] 청소년자립생활관 현황표 .....	52
[표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 .....	53
[표17] 인터뷰 참여 기관 및 참여자 정보 .....	88

## [그림목차]

[그림1] 쉼터 청소년 현황 .....	47
[그림2] 연간 요보호아동 발생현황(보건복지부) .....	47



# I. 들어가며

## 왜 청소년 주거권을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집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불안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평범한 나의 주거공간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집은 안전하게 살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편히 친구들과 놀 수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친구랑 살 수도 있는 집.”

“(탈가정 청소년에게) ‘어서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세요.’가 아니라 ‘갈 곳은 있으세요?’를 물어 야 해요. (...) 사회는 청소년을 끊임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청소년이 집에 잘 있으면 지원을 집에 해주면 되니까요. 아주 편한 방식이죠. 하지만 그 청소년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생겨날 거예요. 청소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집은 나를 위한 집이 아냐: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권 이야기〉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고 불안정한 생활을 전전할 때 이들을 만나는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삶에 동행하면서 그들 옆을 지키는 일과 연결 가능한 자원들을 그때 그때 연결하는 일이었다. 어떠한 이유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든, 청소년들은 ‘살만한 집’을 찾아 집을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자원들 가운데 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쉼터와 같은 시설 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에게 쉼터와 같은 ‘시설’은 ‘살만한 집’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의 불안정은 탈가정 청소년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청소년 지원 현장은 이를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우리의 한계를 늘 경험하게 되었고,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일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가정으로도 시설로도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안정적 공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청소년 주거”의 문제를 심도있게 바라보게 되었다.

2020년이면 [함께걷는아이들]과 [들꽃청소년세상]이 함께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를 운영한 지 10년차에 들어선다. 가정에서 ‘탈출’하여 나온 청소년들은 대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형편에 놓여 있다. 시설에서도 쫓겨나가거나 거부하는 이들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끊임없는 주거 이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EXIT에서 만나는 청소년들도, 활동가들도 하루살이처럼 산다는 느낌? 오늘 하루 모텔에서 지내기 위해 조건 사기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등의 행위를 해야 할 때가 되게 많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 열악한 위치나 환경에 놓이기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지켜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위기 지원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게 되는데 자원은 한계가 있고...”

〈EXIT 활동가 발언 중〉

청소년들의 주거 위기를 해결하려면 시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연계하는 시설이 청소년에게 좀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이나 규칙을 바꾸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우리는 ‘탈시설’이라는 언어를 만났다. 일시적인 거주 시설의 제공이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장애인권활동 현장에서는 “탈시설”을 꽤 오래전부터 정책적 요구로 제기해 왔고, 홈리스 지원 활동에서도 “주거 우선 지원”(Housing First)이 국제적 흐름으로까지만 들어지고 있는 반면 왜 청소년지원현장에서는 지금껏 탈시설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하지 못했는지, 왜 청소년의 주거를 권리로서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탈가정 청소년들이 사정이 되는 만큼, 인연이 닿는 만큼 친구나 지인의 집, 아파트 계단, 모텔, 피시방, 고시원, 교회, 찜질방, 쉼터와 같은 임시적인 거처를 옮겨 다녀야 하는 현실,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집마저도 ‘운’이나 일시적 ‘호의’에 맡겨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거불안 문제를 권리의 언어로 제기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했다.

- ▲ 가족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정 내 폭력의 양상은 어떠한가
- ▲ 청소년들은 왜 보호시설로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잦은 이동을 반복하나
- ▲ 청소년들이 ‘살고 싶은 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장벽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청소년의 시선과 입장에서 주거권의 현실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움직임을 ‘아래로부터’ 만들어 내고자 [청소년주거권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가족복귀와 시설보호, 두 가지 범주만으로 수렴시킬 수 없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유관기관 실무자 및 활동가, 법률 전문가들의 연대에 참여하였다.

이미 [함께걷는아이들]의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청)”으로 만나고 있던 현장기관인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이 마음을 모아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청소년 인권 이슈나 주거권운동에 참여해 왔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인권교육센터 들],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역시 네트워크로 힘을 모았다.

우리는 청소년 주거권 문제가 1, 2년 안에 결코 끝날 수 없는 목직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았고, 네트워크 활동에도 그만큼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첫째인 2019년에는 주거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선행 활동 검토, 청소년 주거 관련 법과 정책 검토, 해외사례 연구 등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졌다. 찾아낸 정책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 현장의 사례들로 직접 지원정책의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였고,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보호시설 현장에서 실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안적 시도들도 검토하였다. 지난 한해 동안 고민하고 궁리한 결과물을 내어놓음으로써, 청소년 주거권 활동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일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II. 한국의 청소년 주거지원정책

### 1. 주거지원정책

#### 1) 개요

한국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현물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 외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행 정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섭함에 있어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 2) 주거급여

##### (1) 주거급여 제도 개요

###### ① 「주거급여법」의 제·개정 과정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주거급여법」 제1조).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급여 체계로 지원되었으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하였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자가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2018. 10. 1. 부터 부양의무자 요건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하다.

## ② 임차급여 수급자 선정대상 및 지급 수준<sup>1)</sup>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4 이하인 사람으로(「주거급여법」 제5조), 2019년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한 2019년도 기준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차 수급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금액을 임차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표2]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상한금액

(단위: 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1)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2) 청소년 대상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장의 단위를 ‘개별가구’로 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및 제4조 제3항).<sup>2)</sup> 주거급여에서도 가구를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및 가족관계등록부 구성원을 기준으로 보장가구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보장가구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외에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포함된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가출, 행방불명, 또는 해당 가구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된다(동법 시행령 제2조).<sup>3)</sup>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도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한,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의 세대원으로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보장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청소년의 주거에 대하여 별도 가구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가능하다.

자신이 속한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지만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청년에 대해서도 실제 원가족과 따로 사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안을 2019년 7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담아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주거급여 체계에서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를 하나의 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을, 완화하여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청소년 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후기 청소년 포함)이 수급 가구인 원가정과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원가정과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 중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범위에 들어가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들 중 원가구가 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원가정과 분리되어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만 19세 미만의 탈가정 청소년은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후기 청소년들도 수급가정에서 분리된 자들만 개선 예정된 주거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개선안이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 및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중에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는 받을 수 있다.

### **(3) 주거급여 실제 신청 과정**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및 기타구비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와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 등에서 실제 청소년이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는 과정을 직접 조력해 본 결과이다.

### [사례1] 만 18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

A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8세의 청소년이다. 친모는 어릴 때 사망하고, 계모가 부와 이혼한 뒤, 부는 알콜 중독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청소년이다. 현재 A는 부모와의 연락도 단절한 채, 별도의 가구에 아는 지인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를 겨우 낼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의 주거급여 신청에 대하여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월세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다만, 당사자가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통장거래 내역 등의 관련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사례2] 만 18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

B는 10대 초중반 집을 나와 소년원, 쉼터 등에서 생활하다가 현재 만 19세가 된 청소년이다. B는 보호관찰 대상자이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스스로 일을 하며 혼자 살 수 없는 처지이다. 가족과 주소가 분리된 것은 아니나, 가족으로부터 실질적 보호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어머니가 본인 가구로 받는 생계급여 중 B의 몫으로 20만원 정도를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고 있다.

B의 주거급여 신청에 대하여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가족해체 심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소이전이 되지 않고 생계 급여 등 수급비를 받은 사실이 있어 해체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답변하였다. 가족의 해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가족과 쌍방 의사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가족의 해체로 인정된다면 원가족의 부정수급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위험도 있다고 안내하였다.

### [사례3] 만 18세 미만 청소년

청소년 C는 2002년생으로 만 17세의 청소년이다 가족으로부터 가해지는 학대, 폭언, 무시, 신체적 폭력 등을 피해 탈가정된 C는 부모의 폭력에 대해 신고한 적이 없고, 신고할 생각도 없다. C는 수도권 지역 지인들의 집에서 임시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쉼터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C의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에 문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거주목적의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주거가 불분명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시원이 됐든 원룸이 됐든 어떤 곳에 거주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주거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4] 한계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를 보장단위로 삼고 있어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주거급여 제도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원가정과 떨어져 살고 있고 사실상 절연한 채 원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중삼중의 장벽을 뛰어넘은 다음에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연령 제한의 장벽이 있다. 원가정의 양육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여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않는 한, '만 19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에 가로막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원가정에서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면, 원가정이 부정수급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렵게 개별가구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까지 단독으로 진행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한데, 이 또한 청소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서(「민법」 제5조),<sup>4)</sup> 임대인들이 미성년자

4)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와의 임대차계약을 기피하게 되므로 청소년 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만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은 전입신고서상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고, 본인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해석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내지 단독세대주로 신고를 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확인을 받을 수 없고 미성년자가 거주 사실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읍, 면, 동 장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sup>5)</sup>

만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주거급여에서의 원가구 분리 시행안'도 원가구가 수급가구이고 미혼인 경우에만 원가구에서 분리된 가구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3) 공공임대주택

#### (1) 공공임대주택 개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공급주체가 다르다. 종류 및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면서 임대 의무기간을 두는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sup>6)</sup>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2018),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표3] 공공임대주택 개요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주택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60㎡ 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지자체, LH	20년	85㎡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45㎡ 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공급신청 자격자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는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각 공공주택 유형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총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액을 두고 있다.

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2) 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하다. 그러나 ①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경우, ② 직계 존속이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되어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된 미성년 세대주(소년소녀가정), 그리고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내국인인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요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이 전용 40㎡이하인 주택을 임대기간은 50년, 임대료는 시중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하여 임차할 수 있다. 여러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도 무주택자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②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제도는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임대기간은 30년,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하여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청소년 중에서도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을 보호하는 중인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7)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③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세부 유형별로 임대주택의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임대기간을 10년/20년/30년으로 하고 임대료를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여러 대상자 중 청소년은 제한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5년이 지나지 않고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의 재량<sup>8)</sup>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④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전세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청소년 중 소년소녀가정이나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가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이 보호 종결 이후 5년 이내에 전세주택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임대 가능한 전용면적은 1인 가구 기준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하는 전세금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까지 만 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만 20세 이후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1~2%)를 부담한다. 단, 대학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sup>9)</sup>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 8)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③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중략)
5.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 9) 「아동복지법」 제 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 ⑤ 청년전세임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전세임대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그 주택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은 대학 소재 지역내, 취업준비생은 신청지역 내 주택을 계약할 수 있다. 공급면적 60m<sup>2</sup> 이하 주택에 대하여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그 외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2년 단위로 총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2019년 7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된 이후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이 종료된 보호종료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도 1순위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었다.<sup>10)</sup>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는 나이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서,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청소년들이 퇴소 시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한다면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0)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임대주택의 일부를 무주택자인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중인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1호에 2인 이상 거주(이하 이 조에서 "공동거주"라 한다)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제2조제7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하 "보호종료아동"이라 한다)
      -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제2조제7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라 한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범위에서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3) 후기 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만 1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후기 청소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 지원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다.

#### **①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구·군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직장에 취업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들이 공급대상이 된다. 전용 면적 45m<sup>2</sup> 이하의 주택이 임대기간은 최대 6년, 임대료는 시세의 60 ~ 80%로 하여 공급된다.

#### **②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 면적 85m<sup>2</sup> 이하이고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시세 대비 30~50%의 임대료로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상지역에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자이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신청자나, 미혼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엔 타 시, 군 출신 불문하고 신청 가능하다.

## (4) 한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들은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광범위한 청소년들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대상자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긴급지원 대상자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전세임대에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도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거나, 아직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주거 빈곤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을 모두 포괄하여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제도가 주거 빈곤 상태 외에 복지시설 퇴소, 폭력피해 등 추가적인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설이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고시원 등 비적정주거에 머무르거나 다른 주거형태로 생활을 영위해 온 청소년들은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소녀가정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가정 내지 시설에서만 거주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 보호종료아동을 제외하고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못하는 점도 큰 문제이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사람들은 입주 신청을 하기도 어렵다는 점 또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고려할 때 진입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후기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청년 대상 임대주택 사업들도 역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청년매입주택 등에서 그 주된 대상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삶을 영위하는 후기 청소년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 4) 긴급주거지원

### (1) 「긴급복지지원법」 개요<sup>11)</sup>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등의 위기상황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위기사유로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동법 제2조).<sup>12)</sup>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여야 하며, 필요한 급여를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긴급지원은 단기지원이 원칙이며 1개월의 지원 이후 시·군·구청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추가로 2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접수 후 1일 이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총 48시간 이내 우선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복지급여 중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sup>13)</sup> 2019년 지원기준의 경우 가구구성원수 및 지역별 상

11) 보건복지부(2019),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1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금전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고 이 경우 지원기준 금액을 지급한 후 추후 주거상태를 확인한다.

한액은 아래와 같고, 지원기간은 1개월의 선지원을 원칙으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지원 가능하다.

[표4] 긴급복지 주거비용 지급 상한액

(원/월)

도시구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주거와 관련된 위기상황으로는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고 내용증명 등이 도달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 [2] 청소년 대상 긴급주거지원

긴급지원 역시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들을 하나의 보장단위로 한다. 다만,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본다. 따라서 청소년이 보호자에 의하여 유기와 방임, 학대 등을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지원 가능하다.

## [3] 청소년 긴급주거지원 실제 신청 과정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 또는 주변인이 보건복지콜센터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신고하며 지원절차가 시작<sup>14)</sup>된다. 지원요청

1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

을 확인한 행정기관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사후조사 등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절한 경우 지원을 연장하거나 종료하고, 지원이 부적절하다 판단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sup>15)</sup> 아래는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와 성소수자 청소년위기지원센터 평동, 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EXIT에서 만 18세 이상 후기 청소년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나눠서 각 사례별로 「긴급복지지원법」상 주거지원을 직접 신청해 본 결과이다.

### [사례1]

청소년 D는 현재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머물고 있으나, 모가 적절한 양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따로 거주하고 싶다. 그러나 쉼터에는 머물고 싶지 않다.

D가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보호자로부터의 유기나 방임,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혼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주소가 먼저 분리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방임과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원가정의 부모와 당사자 모두에게 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5)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내지 제14조 참조

### [사례2]

청소년 C<sup>16)</sup>는 2002년 생으로 만 17세의 청소년이다. 가족으로부터 가해지는 학대, 폭언, 무시, 신체적 폭력 등을 피해 탈가정한 C는 부모의 폭력에 대해 신고한 적이 없고, 신고할 생각도 없다. C는 수도권 지역 지인들의 집에서 임시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쉼터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C가 긴급주거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동주민센터와 복지담당 기관 등에 문의해 본 결과, i) 긴급지원제도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ii)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연락을 돌리는 일이 잦았다. 답변을 하는 경우라도 긴급주거지원 신청에서 반드시 가정폭력까지 증명할 것을 요구<sup>17)</sup>하고,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등록기준지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다.

### [사례3]

E는 보육원, 소년원을 나와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20살인 후기 청소년이다. E의 경우는 청소년 단체의 조력을 통해 실제로 긴급주거지원을 받아볼 수 있었다.

처음 긴급복지지원 신청 단계에서 E와 청소년 단체가 구청의 복지정책과에 문의해 본 결과, 주민등록상 등록지로 문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있어야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상이한 답변을 E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E는 청소년 단체의 도움으로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고시원을 찾고,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야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긴급복지지원 이후 주거급여도 연계되어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16) 본고 p.15 사례 3의 당사자.

17) 가정폭력 상담소장이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확인서 등으로 증명한다고 안내받은 바 있다.

## (4) 한계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긴급주거지원이란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거에 머무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는 형태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긴급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소년이 현재 놓인 ‘주거 상황의 긴급성’보다도 ‘가정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또는 가정폭력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긴급복지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원 과정에서 드러났다. 먼저 등록된 주소지가 있어야 긴급주거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지금 당장 원가정과 분리된 임시 거소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같다. 주거급여 신청 단계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청소년에게 별도의 주거 분리가 선행되어야 복지 제도를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한편, 학대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하여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들도 어려움이 있다.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에는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 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의 정의를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숙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이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동법 시행규칙 제 2조).

## 5) 기타 주거복지 지원 사업

###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이다.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토지·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최고 9,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다.

[표5] 주거취약계층 지원 기준

소득	자산	자동차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78억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및 부채 포함)	2,545만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2)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표6]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대상

지원대상	지원조건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무소득자이며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를 하는 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첫 취업 후 5년 이내로 본인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중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할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무주택자이자,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에 따라 금리에 차이를 두고 있다.

#### **(4) 한계**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는 원가정이나 시설 보호를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독자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청년 빈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도입된 주거비 지원사업들도 만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 또는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2. 요보호아동 주거지원정책<sup>18)</sup>

### 1) 개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탈가정 위기청소년 정책”과는 다소 정책의 목적과 내용이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의 방식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보호하였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도록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관련 법률과 정부 정책상의 표현에 따라 ‘청소년’이 아닌 ‘아동’으로 표기)에 대한 주거 관련 정책과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보호기간 중 아동\_만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친가정 복귀 혹은 연고자 대리양육, 가정 위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입양, 아동복지시설 입소로 연결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은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이 아동의 입양 혹은 위탁을 원할 경우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이용시설이나 일시적인 보호시설을 제외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있다.

---

18) 본 장의 정보는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였으며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각 사업의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였음.

[표7]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2017.12월 기준)

시설	개소	대상	기능	이용 기간	예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533	- 만 18세미만 보호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만 18세 미만까지 (시행령에 따라 연장가능)	복권 기금
아동양육시설	242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 입소아동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지원	- 만 18세 미만까지	지자체 예산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12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만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지원 (상담, 자립, 정서, 생활지원 등)	- 만 24세까지 (특정사유 연장 가능)	지자체 예산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사업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하다.<sup>19)</sup> 2017.12.31. 현재 전국에 59명의 ‘소년소녀가정’이 있으며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20만원이상/인), 전세자금 지원(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친가정에서의 보호와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정위탁, 입양, 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의 경우에만 별도의 주거지원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지정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극소수에 불과하다.

19)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3) 보호종료 이후\_만 18세~24세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위탁아동이 11,983명, 아동양육시설 아동 11,665명, 공동생활가정 2,811명으로 총 26,459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sup>20)</sup> 매년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2017년 4,121명이 요보호아동으로 발생되어 시설보호로 2,421명, 가정위탁 1,413명, 입양 285명, 소년소녀가정으로 2명이 보호되었다.<sup>21)</sup>

아동복지시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데, 특정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표8] 보호 연장사유

법조항	법조문	적용안내
법 제16조 4항 1호	「고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중인 경우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한 연장 ※ 군 입대(입대 전 대기기간 포함), 여학연수, 1년 이내의 단순휴학(단, 1회만 가능)은 중지사유이고 이외 단순 휴학은 종결사유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 4항 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한 경우 연장 종료
시행령 제22조 1호	만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 2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지원 ※장애 질병 등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 3호	만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지원

20)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1) 보건복지부(2018),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법조항	법조문	적용안내
시행령 제22조 4호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만 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보호종료 아동의 규모는 매년 약 4천명 정도이며, 그 중 아동양육시설 퇴소자가 2,279명(2017년)<sup>22)</sup>이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주거관련 정부지원을 받은 아동은 29.1%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자립지원시설 이용 아동이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주택지원에 매년 약 35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3)</sup>

청소년 대상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주택지원)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본 보고서 18-21p)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고 본 장에서는 자립지원시설,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아동자립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1)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 1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만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지원, 자립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을 제공한다.

22)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3) 이정현, 이택호(2017) [2016년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아동자립지원단.

[표9] 자립지원시설 운영 현황

시도	시설명	연락처	정원	성별
서울특별시	돈보스꼬자립생활관	02)845-0985	40	남
	상록여자자립생활관	02)588-7097	30	여
	청운 자립생활관	02)823-1381	30	여
부산광역시	미네르바의 집	051)343-3866	29	남·여
대구광역시	삼덕동 SOS 자립생활관	053)427-9659	30	남·여
	검사동 SOS 자립생활관	053)982-9936	30	남·여
광주광역시	무등 자립생활관	062)224-3762	30	남·여
대전광역시	인애 자립생활관	042)861-2334	34	남·여
충청도	현양 자립생활관	043)266-7113	24	남·여
	향림 자립생활관	041)753-5319	30	남·여
전라도	삼성 자립생활관	063)221-7002	30	남·여
	목포 자립생활관	061)276-0078	30	남·여

## [2]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2019년 신설된 지원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서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24)</sup>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 ※ 사례관리기간 동안 매월 15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
-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 관리, 물품지원 등 1호당 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 : 보호종료자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24)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kohi.or.kr)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

※ 통합사례관리사에게 매월 20만원 상당의 사례관리비(교육비, 자격취득, 긴급지원 등의 용도)를 지원

신청가능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10개 시·도이며, 인천, 충북, 경남은 2020년부터 추가된 지역이다.

### **(3)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서 1인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지자체 예산에 따라 300만원 지급인 경우도 있음)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의 아동 혹은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2017.12월 현재 71,457명의 아동이 통장을 개설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아동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 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5)</sup>

### **(4) 아동자립수당**

아동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2019년 4월부터 신설된 정책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인 아동 중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단,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지급하고 2020년부터 지급 기간을 확장할 예정이다.

---

25)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https://www.adongcda.or.kr>)

## 4) 한계

첫째, 앞에서 살펴본 요보호아동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은 절반 이상이 “시설보호”로 시설은 ‘가정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침상으로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연고자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 55%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 시설 보호 중에서도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5인 미만)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아동은 2,811명, 대규모 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은 11,665명으로 상당수의 아동들이 대규모 집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만 18세라는 연령 기준만으로 자립을 강제하고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은 만 18세로 자립지원금 500만원으로 자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1961년 「아동복지법」에서 시작된 만 18세에 자립해야 한다는 기준이 2020년인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학진학율이 6% 수준이었던 1960년대에 만 18세는 대부분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나이였던 반면, 2016년 현재 대학진학율이 69.8%인 사회적 상황을 고려<sup>26)</sup>하면 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자립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년층이 주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만 29세 이상이며, 대졸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남성 만 33.2세, 여성 만 28.6세<sup>27)</sup>인 것만 보아도 만 18~28세는 사실상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미 취업을 했거나 진학을 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보호가 연장되는 사유나 자립지원시설 입소 자격 등을 취업이나 진학을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진로를 탐색하거나 다양한 문제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배제하고 있다. 2019년 들어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보호종료아동 통합서비스나 자립수당이 신설된 점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고, 자립수당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관할의 쉼터 등을 퇴소한 이들은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안착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 강화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6) 교육부. [2011~2016년 대학 등록자 기준]

27)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 수요실태조사]

셋째, 시설 중간퇴소자들이 놓인 사각지대의 문제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지원은 시설이나 가정 보호를 “졸업”(종료)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중도퇴소한 아동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1984년부터 시작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를 방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만 15세 미만의 아동단독세대가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여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도록 하고 극히 일부 만 15세 이상 세대만을 지정하고 있다(전국 59명, 2017년 2명 지정). 하지만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이 어렵거나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당사자의 주거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무조건 금지(제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폭넓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탈가정 위기청소년 주거지원정책<sup>28)</sup>

#### 1) 개요

정부는 특이하게도 현실상에서는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요보호아동”과 “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부처(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다른 법(「아동복지법」/「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두 대상을 굳이 구분하여 보자면, 부모의 문제(빈곤, 방임, 학대 등)로 더 이상 부모가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된 아동의 경우는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여 자립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동일한 부모의 문제가 핵심적 또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스스로 탈가정하거나 범죄 등에 노출될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정책의 목표를 주로 가정복귀, 사회적응으로만 두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탈가정)을 일시적인 비행 문제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과 청소년의 삶에 스며든 다양한 ‘위기’에 대한 몰이해가 “위기청소년”정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정책 목표에 따라서 “위기청소년”으로 구분된 여성가족부의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1호, 제32조에 근거하여 2019년 현재 129개소<sup>29)</sup>가 운영되고 있으며 만 9~24세의 가출청소년을 그

28) 본 장은 여성가족부의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29) 유보시설 9개소 포함하면 138개소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로 구분되며 일시 쉼터의 경우 가출한 청소년을 조기에 개입하여 위기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머물 수 있는 시기에 따라 단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중복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표10]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구분	일시 쉼터(29개소)	단기쉼터(62개소)	중장기쉼터(38개소)
보호기간	- 24시간~7일 이내 일시 보호	-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sup>30)</sup>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 가출 청소년	- 자립 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 보호 및 거리상담 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 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 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
기능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 청소년 조기 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치	- 이동형(차량) - 고정형(청소년 유동 지역)	- 주요도심별	- 주택가
지향점	- 가출 예방 - 조기발견 - 초기개입 및 보호	- 보호 - 가정 및 사회복귀	- 자립지원
비고	-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출처 : 여성가족부의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의 내용 재정리

### 3)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청소년의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정책이다. 만 1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현재 전국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제31조 제2호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정책으로 지침이나 운영규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인천과 경기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sup>31)</sup>

- **목적** : 취업 및 대학진학 등 사회적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청소년에게 일정기간 기본적 생활환경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립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지원
- **이용대상자** :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만 25세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장기쉼터를 비롯한 청소년보호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중 기본적인 경제적 자립여건을 갖춘 청소년(취업 및 인턴십 과정, 대학진학 등)
  - 단순 대학진학 청소년은 불가하며, 대학진학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는 청소년
  - 자활작업장 근무 및 직업기술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 ②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sup>32)</sup>

- **지원서비스** :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불안정 해소 및 경제적 안정으로 자립기반조성 지원. 주거우선 지원을 통해 대상 청소년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 대신, 저축을 통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30) 청소년자립지원관이 개소 운영되지 않는 시도에서는 개소시까지 한시적으로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음.

31) <http://www.icyouthself.org>

32) <https://blog.naver.com/stand1318>

[표11]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서비스

서비스	내 용
주거지원	-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불안정 해소 및 경제적 안정으로 자립기반조성 지원 - 주거우선지원을 통한 대상 청소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 대신, 저축을 통해 자립 종자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
생필품지원	-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주거, 자립 기반 마련을 유도하고자 지원
취업지원	- 취업,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교육비지원	- 장기간의 훈련을 통한 고도의 숙련 기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국가 기간산업 등 주요직장을 중심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용하도록 지원
자립지원	- 쉼터(시설) 퇴소 후 자립 생활에서 상황별 대처방법과 이를 통한 자립 기술 습득으로 자신감 향상 및 자립 정착 도모
심리·정서 상담지원	- 쉼터(시설) 퇴소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역량강화 - 상담을 통하여 보호종료아동 욕구 파악 및 자립상태 점검
의료지원	- 쉼터(시설) 퇴소청소년 가운데 의료보호, 직장·지역 의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보건·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사례지원	-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별로 슈퍼비전이 필요한 쉼터 퇴소청소년의 사례들을 공유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만 19~24세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법, 정책 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

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단,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을 할 수 있다.

[표1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법

관련법	법조항	법조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li> <li>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li> <li>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ul>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li> <li>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li> <li>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li> <li>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li> <li>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ul> </li> <li>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li> <li>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li> </ul>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li> <li>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li> <li>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li> </ul> </li> </ul>

관련법	법조항	법조문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p> <p>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p> <p>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p> <p>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p>	<p>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제1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p> <p>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p> <p>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p> <p>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p> <p>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산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위의 법에 의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현  
황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2018.12.31.기준)

구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인원	906	29	126	175	185	2	195	175
건수	4,321	101	542	848	986	7	1,203	418
예산 (백만원)	1,242	28	112	218	170	5	116	76

출처 : 권미혁 의원실 자료

[표1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출처 : [http://www.mogef.go.kr/cs/ypr/cs\\_ypr\\_f005.do](http://www.mogef.go.kr/cs/ypr/cs_ypr_f005.do)

##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정책의 실제 신청 과정

위에서 살펴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탈가정하고 시설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관련 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실제 안산YWCA여성과성상담

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정책을 신청해 보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 [사례1] 부모의 방임으로 탈가정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으나 방임이 심하여 탈가정을 원하고 있다. 쉼터나 시설 입소는 원치 않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였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그룹홈이나 시설을 연계하지 않고 왜 독립 가구를 굳이 알아보는지 질문하면서 독립적 주거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청소년이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다면 “주소지가 먼저 분리되어야지 실제적인 방임이나 양육을 못하는 것에 대해 확인이 되고 그래야 조사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부모와 함께 조사가 되어야 한다. 보통은 시설에 입소하고 수급 신청을 한다”고 답했다.

### [사례2]

청소년C<sup>33</sup>)는 2002년생으로 만 17세의 청소년이다 가족으로부터 가해지는 학대, 폭언, 무시, 신체적 폭력 등을 피해 탈가정한 C는 부모의 폭력에 대해 신고한 적이 없고, 신고할 생각도 없다. C는 수도권 지역 지인들의 집에서 임시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쉼터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해당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동주민센터와 복지담당 기관 등에 문의해보았다.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며 본인 주민번호를 물어보았고, 본인이 아니라서 개인정보는 모르나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해당지역의 예산) 지금은 안되고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만약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중복이 안 된다. 가정폭력 여부 증명이 필요한데, 증명방법에 대해 구청에도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가정폭력 상담소장이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확인서로 보통 증명을 한다고 나와있더라.”는 답변을 받았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른 주거지원정책의 실제 신청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업 담당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이 직접 신청할 경우 구체적 안내나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구청, 아동청소년지원기관, 복지129, 서울시1388 등도 마찬가지였다.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를 위기로 인한 비행과 일탈의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도 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실제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조차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해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사실상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더욱이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높은 감수성을 갖추고 정책 활용의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담당자들이 청소년의 독립 주거에 대한 욕구를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시설 입소만을 권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적이다.

## 5) 한계

첫째, 보건복지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과 여성가족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별이 존재한다. “위기청소년”으로 명명되어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이용한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 받는 자립지원금과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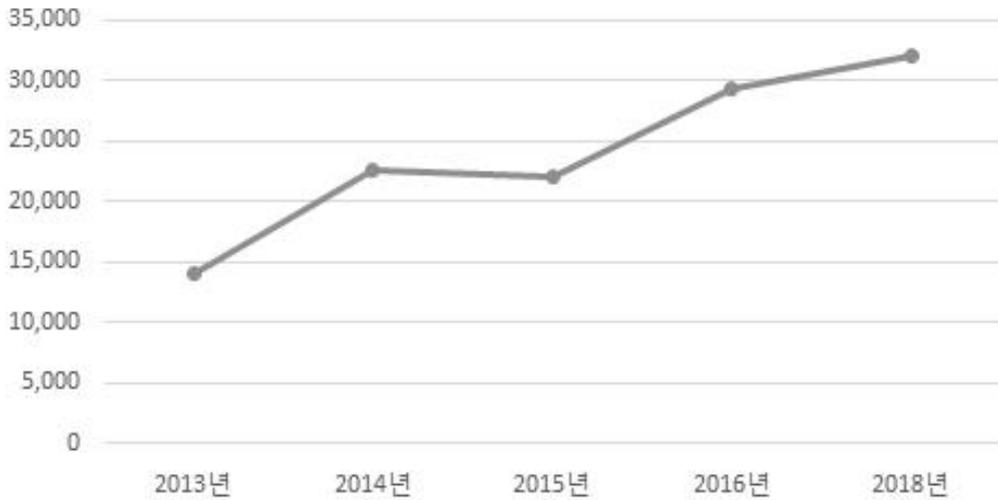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에서 책임지고 아동을 양육한다는 전제가 있는 반면(그 역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동 스스로 가정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탈가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목표 자체가 ‘가정복귀’가 되면서 자립을 위한 지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현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현재 “요보호아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위기청소년”은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 부모에게 문제가 생겨서 부모 스스로 혹은 외부의 신고 등에 의해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로 보내는

33) 본고 p.15 사례 3의 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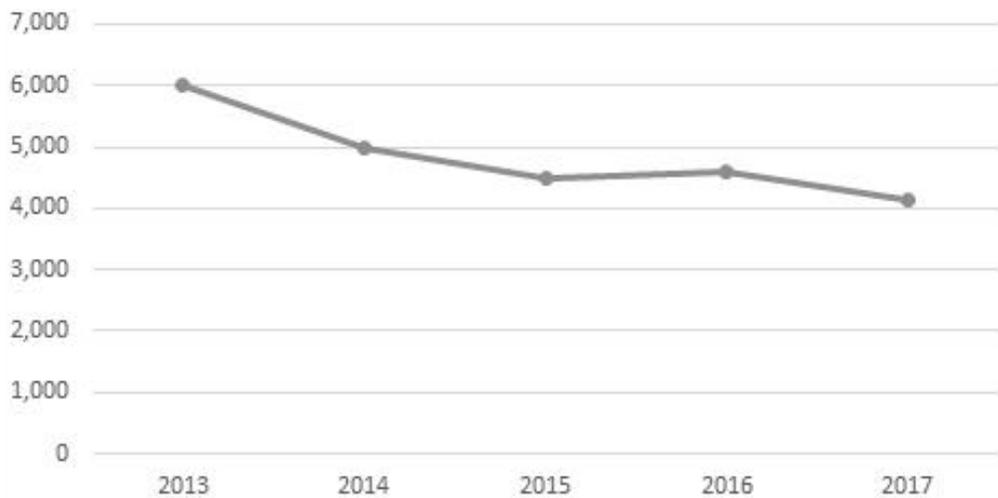
사례보다 아동이 스스로 방임이나 학대를 피해 가정을 나오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단순히 “비행, 위기청소년”으로 문제시하여 가정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1] 쉼터 청소년 현황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현황]

[그림2] 연간 요보호아동 발생현황(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둘째, 탈가정 청소년에게는 원가정 복귀와 시설(쉼터) 입소라는 두 가지 대안밖에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는 두 가지 대안이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만 증폭시키고 있다. 청소년마다 다양한 욕구와 상황이 있다. 탈가정 후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쉼터’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도 있고, ‘쉼터’를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 또는 공동 주거를 원하는 청소년도 있다. 무엇보다 쉼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집’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현재의 위기청소년 정책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결여되어 있고, 사실상 이용 가능한 주거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탈가정 위기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은 시설 입소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가 되어 주거급여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 긴급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을 직접 신청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존하는 정책도 실질적으로 매우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의 경우에도 수급자 지원과 긴급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처한 위기상황을 증명해야 하며 담당자들이 이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등 결국에는 가정복귀하거나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답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성범죄피해 청소년 주거지원정책<sup>34)</sup>

### 1) 개요

정부는 성매매, 성폭력 피해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2)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정책이 있다. 이 대상 중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원시설”을 전국 15개소를 설치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숙식 지원 외에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 3) 친족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조기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법 제1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만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 숙식, 상담, 치료 등 회복 및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34) 여성가족부 [2019년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내용 참고

## 4) 임대주택 우선입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혹은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본 보고서 18p 참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 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뿐 아니라 살인, 강도, 상해, 방화 등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으로 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 59개소가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거칠 경우 심사를 거쳐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시설이나 친족성폭력 특별지원 보호 시설 퇴소자들에게 공동생활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 5) 한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쉼터나 자립지원관 같은 공동생활시설 이외에는 주거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침상으로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입주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입주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원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사건을 접수한 경우만 해당하여 사법적 대응을 하기를 원치 않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 시설에 입소한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은행통장 발행, 휴대폰 개통 등은 법적대리인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보호시설장도 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나 입퇴소가 잦은 시설 특성상 시설장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시설 퇴소 후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보호시설에 일정 거주 기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 다만 퇴소하였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 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으로 한정된다. 또한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시설 종사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입소확인서를 요청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

## 5. 소년보호 종료 후의 주거지원정책

### 1) 개요

소년원을 퇴원하거나 보호관찰 등을 받은 청소년(만 12~22세)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원 중에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에스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제공 등의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소년자립생활관

소년보호처분이 종료된 청소년을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감독하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불우위기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정착지원을 해주는 소년보호 전문재단”<sup>35)</sup>으로 소년원에서 퇴원한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만 12~22세의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기관 추천(의뢰)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무료숙식, 청소년전문 심리상담, 학업연계지원, 취업활동지원, 현장체험지원, 재능기부자 연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기간은 최하 6개월부터 자립의지 평가 후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전국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sup>36)</sup>

35)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http://www.kjpa.or.kr/sub.asp?cate1=1&cate2=1>) 2020.1.21. 확인

36) 위 홈페이지

[표15] 청소년자립생활관 현황표

시설	소재지	정원	전화번호	설립지원기관
경기	경기도 의왕시	14명	031-457-6101	재단/복권기금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16명	070-7455-6180	포스코/복권기금
광주	광주광역시 과안구	16명	062-953-6101	포스코/복권기금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16명	070-7455-6131	포스코/복권기금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12명	042-533-0081	가스공사
경기여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명	070-7455-6170	포스코/복권기금
전북	전주시 덕진구	18명	063-251-6033	복권기금
강원	춘천시	18명	070-7455-6160	복권기금

###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위 감호위탁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약 6개월간 보호자에게 아동을 잘 보살피도록 하는 처분으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법무정책의 일환이기는 하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2조의 청소년 복지지원시설의 하나로 분류되어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 12. 31. 현재 전국 16개소가 있고 최소 5인 최대 10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이다.<sup>37)</sup>

37)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청소년사업안내]

[표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

(2018.12.31 기준)

번호	지역 (관할법원)	시설명	성별	소재지	신고일
1	부산	두드림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부산 동래구	2017.1.24
2		등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부산 금정구	2016.12.28
3		라파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부산 연제구	2017.1.19
4		반디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부산 수영구	2017.1.13
5		예람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부산 북구	2017.1.17
6	대전	민족사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대전 서구	2017.2.3
7		사계절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대전 중구	2018.2.2
8	울산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울산광역시 중구	2017.3.23
9	충남	꿈이레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충남 논산시 은진면	2017.2.24
10	경남	살롬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경남 창원시 진해구	2017.1.20
11		소망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7.1.20
12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경남 김해시	2017.1.16
13		엘림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경남 김해시	2017.1.16
14		자운영청소년회복지원센터	남	경남 의령군 대의면	2017.1.23
15		연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경남 거창군 마리면	2017.1.25
16	제주	이시돌숨비소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8.8.21

#### 4) 에스센터

청소년창업비전센터(Youth Education Service Center, 이하 “Y.E.S. 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시설거주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을 위한 숙박형 직업훈련과 상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Y.E.S. 센터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0명을 선발하여 1년간 골프매니지먼트, 용접,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와 같은 직업교육을 하고, 체육, 봉사활동, 상담,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sup>38)</sup> 주거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

나, 숙박형 직업학교에 가깝다.

## 5) 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숙식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고지가 없거나, 연고지가 있어도 여러 사유로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을 받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서 통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최초 입소시에 침구류와 세면도구 등의 생필품을 1회 제공한다. 입소를 위해서는 심리검사, 상담, 기본분류지표, 위험성평가, 자치당면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연장시에는 생활과 자립활동을 측정한 성과분류심사표를 기초로 심사를 받는다. 외박 중 소재 불명이 되면 보호가 정지되고, 절도나 폭력 등으로 소내의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폐소가 되기도 한다.<sup>39)</sup> 시도마다 지부가 존재하며 서울의 경우 서부지소와 북부지소가 있다. 서울 서부지소와 전남동부지소(순천)는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광주남부지소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 12. 현재 1,846명이 생활하고 있고, 만 14~16세가 13명, 만 17~19세가 126명, 만 20~25세가 138명이다.<sup>40)</sup>

## 6) 한계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청소년의 출원 또는 출소 이후의 주거권 논의에서는 가정 밖에서 자립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라는 점이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의 경

38) Y.E.S.센터 홈페이지. (<http://yescenter2014.org/page/?pid=c01>)

3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reha.or.kr/sub/02\\_01.do;jsessionid=855313571C09ADBCCE60EB7F5C569C20?MN1=3&MN2=16&MN3=207&MN=207](https://www.koreha.or.kr/sub/02_01.do;jsessionid=855313571C09ADBCCE60EB7F5C569C20?MN1=3&MN2=16&MN3=207&MN=207))

4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8년도 12월분 보호실적 현황],

우 생활공간 제공과 동시에 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사회복귀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전달을 중심으로 대부분 중규모 이상 단체시설 형태의 생활공간이 부가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단체생활의 특성인지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규칙의 준수가 특별히 요구되기 때문인지, 교정의 목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생활규칙도 엄격하고, 일부 시설은 질서위반을 퇴소사유로 삼고 있다. 시설의 지리적 위치, 엄격한 규율,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로 입소를 꺼리는 이들도 많다. 또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완료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생활공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복귀 지원 서비스 전달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 공간은 사실상 주거 지원 정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단체 생활공간이 아닌 지속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복귀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6. 소결 : 한국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에 던져야 할 질문들

앞서 살펴본 청소년 주거지원정책들은 그 자체의 빈약함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 설계부터 수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1) 주거정책에 청소년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주거빈곤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들, 요보호아동·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 주거지원정책들은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청소년을 단독적인 주거지원의 대상 또는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업, 진학, 탈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과 떨어져 사는 경우라도 청소년은 수급권 가구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기 힘들고, 원가정과 절연이나 학대, 범죄피해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독자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긴급주거지원의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가정 복귀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는 ‘집’이 아닌 ‘시설’ 입소가 권유된다. 현재의 주거정책 또는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에는 청소년, 특히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고,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자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주거지원 정책을 별도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정책을 통해 주거 지원 정책을 별도 수립하는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 3. 28.]의 경우에도 만 18세 이상의 주거취약집단만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sup>41)</sup>

주거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존재가 ‘홈리스’(homeless) 상태에 놓여 있다면 긴급한 주거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홈리스’란 거리에서 한텃잠을 자는 노숙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홈(home)을 박탈

41) 지원주택이란 일상·의료·복지 서비스 등의 지원유지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등 ▲정신질환자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이며, 시세 30%의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년 2백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2019년 현재 입주자의 절반이 노숙인이다. 이때의 노숙인 역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다.

당한, 경제적·물리적·정서적 주거 불안을 겪고 있거나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주거 빈곤 문제는 사회가 만든 약자성이고, 특히 탈가정·탈시설 청소년의 홈리스 상태는 청소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만든 결과다. 원가정이나 시설을 떠나 끊임없이 거처를 이동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부가적인 자격 증명을 요구하고 불행서사를 반복해서 진술하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홈리스 상태’에 주목하는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보호자의 부양 능력이나 자녀 양육 태도, 자녀와의 관계 등 ‘보호자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홈리스 상태가 불러오는 다양한 위기 또는 그들의 주거에 대한 의사를 중심으로 주거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 2) 시설은 집이 될 수 있는가

현행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에 따르면, 원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원치 않는 청소년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은 쉼터,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시설 입소다. 입양, 가정 위탁 등 ‘가족환경’ 형태의 대안양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유아 중심의 제도로만 기능할 수 있을 뿐이다.

거주시설은 주거 이외의 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고 설령 청소년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 생활자가 아닌 관리자의 편의가 우선되고 ▶ 낯선(또는 원치 않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감수해야 하며 ▶ 집단생활에 따른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고 ▶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사적 공간을 확보하기 힘들며 ▶ 주거를 중심으로 다른 서비스를 결합,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보호·치료·비행예방·훈련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거처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에 가깝고 ▶ 사회적 낙인의 위험마저 있다. 한마디로 ‘거주시설’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요청하는 ‘주거 또는 집’이 아니다. 거주시설 중심의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은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셈이다. 더욱이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크고, 삶의 경험을 통해 사회나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십대 중후반의 청소년 대다수에게는 맞지 않는 설계다.

2009. 11. 20.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아동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A/RES/64/142)

은 “거주시설보호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탈시설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 9. 2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KOR/CO/5-6)를 통해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쉼터, 양육시설 등 거주시설은 궁극적인 주거지원정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립주택 제공 등 탈시설을 위한 주거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 3) 나이, 관할부처 등에 따른 차등적 주거지원은 차별이 아닌가

현행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은 만 18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만 18세(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엔 만 19세 이후) 이후엔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수령, 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관과 같은 주거공간 입주 등이 가능해지는 반면, 그 이전의 연령대에는 오직 거주시설 보호만이 제공된다. 가족환경, 보호자와의 관계, 학대 경험, 주거 상태 등이 거의 유사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는 제공되는 생활주거 등의 지원이 여성가족부 관할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설을 떠난 청소년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거리, 쪽방, 고시원 거주 등 주거 취약 상태에 동일하게 놓여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긴급주거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같은 주거 위기를 경험하고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의 나이, 정책의 관할 부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거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9. 7. 25.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 정의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정의에 따르면 ▶ 관할부처에 상관없이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중도에 시설에서 나온 청소년 ▶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주거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자립지원 대상에 포괄된다. 현행 법률의 차등적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거지원의 보편적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4) 미성년 또는 만 18세 미만자는 주거에서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어야 하는가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민법」 제5조). 이에 따라 미성년인 청소년이 학대 등을 피해 집을 나와 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나타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 청소년이 아무런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법」상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居所(居所)지정권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민법」 91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만 18세 미만의 실종아동 등<sup>42)</sup>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sup>43)</sup>도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종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종’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로 탈가정한 경우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 가능토록 하는 것은 탈가정 청소년을 더더욱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상 성년 기준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성년 기준을 하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2019년 12월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고려할 때, 「민법」상 성년 연령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상 성년 연령이 단시일 내에 개정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낮추어진다고 해도 만 18세 정도로 낮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원가정과 떨어져 살고 있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주거지원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민법」상 행위능력을 엄격히 물어야 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에서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생활지원, 주거지원과 같은 사회복지 급여의 경우, 「민법」상 규정에도 불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한다.” 탈가정 청소년도 이에 포함된다.

43) 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동법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하고 법적 행위능력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주거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의 신청과 수령, 수령한 급여의 처분 등에 대해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 개별지원자가 이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지만 ▶ 의사능력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전향적으로 삽입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탈가정임이 명백하고, 당사자가 보호자나 경찰에 거소가 알려지는 것을 꺼릴 경우 ‘실종아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 개정이나 엄격한 법 해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5)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정책을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가

빈약하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청소년 주거지원정책들도 이해하기 복잡하고, 실제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잘 모르는 ‘변방의 정책’이었다. 공무원들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안내하기보다 관행대로 무작정 거주시설 입소를 권유하는 것도 문제다.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주거지원 정책들을 청소년 당사자나 그들의 곁에서 동행하는 청소년 지원 현장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방치해 놓고 있는 현실 자체가 청소년 주거권의 현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목요연하게 활용 가능한 주거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자료의 보급부터가 절실하다. 이 안내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이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정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자료에 담긴 내용을 안내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Ⅲ. 해외의 청소년 주거지원정책

## 1. 개요

현행 한국의 법제도 정책에서 확인한 것처럼 탈가정 청소년 주거지원은 오로지 시설 기반의 보호로써만 이루어져야 할까? 청소년 주거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두고,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 주거정책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었고, 각 국의 다양한 법정책 체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다만 조사를 통해 청소년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도하고 있는 몇 국가들에서 1)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고 고정적 주거가 없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청소년 홈리스 개념), 2)청소년 주거권을 확장하려는 시도(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 정책)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흐름이 한국의 청소년 주거권 논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정리하였다.

### 1) 가출 청소년과 청소년 홈리스(Youth homelessness)

#### (1) 가출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 쉼터의 이용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호, 제32조의2 등).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거나, 그 업무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소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경우 법원 소년부의 판단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제6조 제1항과 「청소년 보호법」제3조 제2항은 가출과 비행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가출과 비행을 보호자나 친권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법에 공식적으로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정

의된 부분은 없지만,<sup>44)</sup> 곳곳에서 확인된 ‘가출’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가출은 예방의 대상이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집(家)에서 나오는/나가는(出)’가출은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이고, 따라서 법에서도 행위를 막거나, 그 행위의 방향을 지도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경찰청 내 소년과에서 가출청소년을 선도, 보도(補導)하며 비행방지와 보호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소년경찰활동’이라 부르며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가출을 청소년의 불량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소년경찰활동이 비행예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sup>45)</sup>

## [2] 청소년 홈리스 개념

한편 영미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탈가정 상태를 ‘가출(Runaway/from home)’보다는 ‘홈리스(Homeless)’로 인식,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 서술할 해외의 주거지원이나 주거급여 사례를 이해하려면 ‘홈리스’개념이 청소년에게는 어떤 맥락과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영국과 미국의 홈리스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 ① 영국 홈리스 감소법 2017(The Homeless Reduction Act 2017)<sup>46)</sup>

영국은 2017년 제정한 「홈리스 감소법」에 따라 우선 주거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로 1) 「아동법 1989(Children Act 1989)」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만 16~17세 무연고 청소년, 2) 만 16~18세 사이에 시설 보호를 받았으나 지금은 보호가 종결된 만 21세 이하 청소년, 3) 만 16~18세 사이에 시설 보호를 받았으나 지금은 보호가 종결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만 21세 이상인 자, 4) 폭력 피해 등으로 거주지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자, 5) 기타 특별한 이유로 취약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만16세 이상의 청소년 중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거나 보호가 종결된 경우, 무연고 청소년 중 거주지가

44) 그러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4호).

4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4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103쪽.

취약한 이들은 거주지 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다만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가정해체로 인해 탈가정 청소년이 되는 경우 거주지를 배정받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다.<sup>47)</sup>

## ② 미국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과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sup>48)</sup>은 1974년 제정된 「소년법 및 비행예방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sup>49)</sup> 미국 보건복지부 내 아동 및 가족국 산하 가족 및 청소년 지원국에서 수행하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다.<sup>50)</sup> 청소년 홈리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정의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을 “가족 등과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없으며, 다른 안전한 대체 생활환경이 없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1)</sup>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州) 중에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의 주(州)법에서 정의하는 “홈리스 청소년”은 아래와 같다.

### 〈캘리포니아주의 차별금지규정 중 제12957조 주거차별 (e)항<sup>52)</sup>〉

1. "홈리스가 될 위험"은 현재 주거 상황에서의 퇴거나 해체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홈리스 청소년"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A) 24세 이하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자.
    - (i) 홈리스 또는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음.
    - (ii) 더 이상 연령에 근거하여 위탁 관리를 받을 수 없음.

47) Centrepont(2018), [Research Report:The Homelessness reduction Act; will it work for young peopl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48) <https://youth.gov/youth-topics/runaway-and-homeless-youth/federal-programs>

49) 「소년법 및 비행예방법」의 Title III에 해당한다.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51) 기본 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의 범위에서는 18세 이하, 전환 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에서는 16세 이상 21세 미만

52) Housing Discrimination

([https://leginfo.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GOV&division=3.&title=2.&part=2.8.&chapter=6.&article=2.](https://leginfo.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GOV&division=3.&title=2.&part=2.8.&chapter=6.&article=2.))

(iii) 가출함.

(B) 가족법 제1부 제6부(제7000절과의 협의)에 따라 가족에게서 벗어나 홈리스 또는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18세 미만인 자.

3.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주택"은 홈리스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자립적이고 자급 자족적인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긴급 주택, 전환 주택 또는 영구 주택을 의미한다.

### 〈미네소타주의 홈리스 청소년법(Homeless youth Act)<sup>53)</sup>〉

#### 제1조 정의

(c) "홈리스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반 없이 적절한 보호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가 없는 24세 이하의 사람,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보호소와 관리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기를 꺼리거나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음은 고정, 정규 또는 적절한 야간 주거지가 아니다.

- (1)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공 또는 민간 운영 수용 시설
  - (2) 임시 생활 시설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관 또는 공공 또는 민간 운영 수용 시설
  - (3) 전환 주택
  - (4) 30일 이상 영구 거주, 주거 임대 또는 임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동료, 친구 또는 가족과의 임시 배치, 또는
  - (5) 사람을 위한 숙소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민간 장소
- 홈리스 청소년은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해 감금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 (d) "홈리스 위기 청소년"은 가까운 미래에 홈리스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한다. 중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지위나 상황은 아래와 같다.
- (1) 집에서 탈출한 청소년
  - (2) 이전에 홈리스였던 청소년
  - (3) 부모나 일차 보호자가 홈리스이거나 이전에 홈리스였던 청소년

53) Homeless youth Act (<https://www.revisor.mn.gov/statutes/cite/256K.45>)

- (4) 가정에서 학대와 방치에 노출된 청소년
- (5) 화학적 또는 알코올 의존성, 정신 건강 장애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청소년
- (6) 가출 청소년

(e) "가출 청소년"은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보호자 또는 기타 합법적인 장소에 있지 않는 18세 미만의 미혼 아동을 의미한다.

「맥킨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은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기관에 기금을 제공하는 연방 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는 홈리스와 주택 프로그램(Homeless and Housing Program)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홈리스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54)</sup> 이 법에서 “홈리스 어린이·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 〈맥킨니-벤토 홈리스 지원법<sup>55)</sup>〉

- (A)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
- (B)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 (i) 주거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안적이고 적절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서 살고 있거나, 긴급 쉼터 또는 과도기 쉼터에서 살고 있거나, 병원에 버려져 있는 경우
  - (ii) 인간을 위한 정기적인 수면 숙소로 설계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민간 장소를 1차 야간 거주지로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 (iii)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 (iv) (i) ~ (iii)에 기술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주 아동은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홈리스로 본다.

54) Federal Programs,  
<https://youth.gov/youth-topics/runaway-and-homeless-youth/federal-programs>

## [2] 청소년 홈리스와 청소년의 행위능력

청소년 홈리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비청소년 홈리스 정책을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차용하고 있다. 뒤에서 살필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퍼스트 정책 등은 청소년에게도 시설보호가 아닌 단독적인 주거를 보유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으로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경우 청소년이 행위능력의 제한으로 주거계약의 독자적이고 완전한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행위를 할 때에 친권자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주거가 제공되더라도 청소년은 자립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홈리스 법령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정한 경우 청소년의 행위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 ① 미국<sup>56)</sup>

아칸소주는 연방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에 따라 홈리스 청소년이 진료에 동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진료 동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인디애나주는 홈리스 청소년이 자동차 보험정책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고 자동차 보험료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들의 출생등록증, 신분증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부모,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켄터키주는 홈리스나 청소년인 학생들을 위해 교육 과정 수료의 대안을 마련했고, 일정 연령 이하의 홈리스는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은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동의 요청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에게 외래환자 정신 건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타주는 홈리스 청소년들이 임시 거처, 관리 또는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했고,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개정했다.

---

55) The McKinney-Vento Definition of Homeless (<https://nche.ed.gov/mckinney-vento-definition/>)

56)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s://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homeless-and-runaway-youth.aspx>)

## ② 캐나다

캐나다 계약법은 보통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지만, 만약 계약이 필수품(거처, 음식, 건강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아파트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임대료에 포함된 책임과 권리를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받도록 되어 있다.<sup>57)</sup>

## ③ 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연령별로 행사 가능한 권리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만 12세가 되면 가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스스로 위탁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가정은 아동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산다는 의미이다. 만 15세가 되면 스스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자기 수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만 16세가 되면 개별 건강보험증을 가질 수 있다. 이때부터 노령, 실업, 장애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금은 부모가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된다.<sup>58)</sup>

노르웨이의 후견인법은 후견인이 아동을 위해 재정문제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이 만 12세를 넘으면 후견인은 아동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을 해야 하고, 만일 그 후견인의 결정에 아동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진정할 수 있다.<sup>59)</sup> 즉 아동의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57) Centre for Equality Rights in Accommodation

(<http://www.equalityrights.org/programsandservices/youth-housing-rights/>)

58) <https://www.infofinland.fi/en/living-in-finland/family/children/children-s-and-youths-rights-and-obligations>

59) UN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노르웨이 국가보고서

## 2. 주거지원 정책

### 1)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 [Housing First for Youth (HF4Y)]

‘하우스링 퍼스트’는 홈리스에게 자활이나 훈련, 취업을 단계별로 밟아 최종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를 우선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최근에는 홈리스 상태를 끝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홈리스 운동영역에서 적극적인 도입과 실현이 요청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홈리스 상태의 사람들이 자립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취업에도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우스링 퍼스트의 주요 원칙은 1)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 2) 선택의 존중 3) 주거의 자활과 강화 4) 지역과 사회로의 통합이다.<sup>60)</sup>

#### (1)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 개념<sup>61)</sup>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는 홈리스 상태를 경험하거나 위험에 처한 청소년(만 13~24세)을 위한 권리 기반 개입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적절한 주택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웰빙, 생활 기술, 교육과 고용에 대한 개입, 사회 편입에 초점을 맞추고 연령에 맞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과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성인으로의 건강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는 청소년 홈리스에 대한 공동체의 태도를 이끄는 철학뿐만 아니라 개입이나 프로그램 모델로도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의 적응은 청소년 홈리스의 원인과 조건이 성인과 구별된다는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결책은 청소년 중심적이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주거권이 있으며, 홈리스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거를 먼저 제공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60) Y-Foundation(2017), [A Home of your own-housing first and ending homelessness in Finland]

61) 이하는 "This is housing first for youth - A program Model Guide"를 참고하였음

##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의 핵심 원칙

1. 전제조건 없는 주거권
2. 청소년의 선택, 청소년의 목소리 및 자기 결정권
3.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과 웰니스 지향
4. 기간의 제한이 없는 개별화된 고객 중심 지원
5. 사회포용 및 지역사회통합

FIGURE 5: AREAS OF SUPPORTS TO ENHANCE HOUSING STABILIZATION (HOUSING FIRST FOR YOUTH)



### 주거 지원(Housing Supports)의 주요 영역들에 포함되는 것

- (1) 주택 확보에 대한 도움말 :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옵션을 통해 안전하고 저렴하며 적절한 주택을 찾고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2) 주택 보유 : 청소년들이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제때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집주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친구나 룸메이트와 거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 (3) 임대료 보조 : 많은 젊은이들은 시장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소득의 30%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새로운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에 대한 접근성 : 청소년들이 제 기능을 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가구를 갖추도록 돕는다.
- (5) 일이 잘못될 때 지원 : “홀리스 발생 제로”를 철학으로 삼고, 자의적으로 시간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주거 안정과 위기관리가 개입의 초점 되어야 한다.
- (6) 퇴거 방지 지원 : 퇴거로 인한 주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전문적 정보를 지원한다.
- (7) 사후관리 :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인력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 (2) 각 국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 또는 관련연구

청소년을 위한 하우징 퍼스트의 확산은 청소년 주거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보장하려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정책연구 및 법제도 개선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캐나다), 민간영역에서 하우징 퍼스트를 실험적으로 시작하기도 하고(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국가의 정책으로 이미 시행되어 홈리스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북유럽 국가).

### ① 청소년을 위한 하우징 퍼스트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 ([www.homelesshub.ca](http://www.homelesshub.ca)) 등의 홈리스 연구/운동 단체에서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을 위한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For Youth)를 목표로 한 청소년 홈리스 법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과 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자료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음 내용은 소년을 위한 하우징 퍼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델 가이드인 'This is housing first for youth-A program Model Guide'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청소년 하우징 퍼스트의 핵심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 Structural Prevention (구조적 예방)

- 빈곤 감소
- 저렴한 주택의 가용성 증가
- 불평등과 차별 문제 해결
- 원주민 홈리스 청소년의 구조적 예방
- 청소년 홈리스와 이주 및 이주 간의 연결 고리 끊기
- 모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포용 촉진
- 불우한 어린이 경험의 예방과 감소
- 청소년 홈리스 방지법 및 정책

#### System Prevention (시스템적 예방)

- 공공 기관 및 지원 시스템을 나가기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환 지원

- 공공 시스템과 지원 및 권리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익을 얻도록 청소년들의 능력을 향상
- available(이용가능) / accessible(접근가능) / appropriate(적절한) / affordable(저렴한)
- 청년들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 시스템 개선

### **Early Intervention (조기 개입)**

#### **〈프로그램 영역〉**

- 가족과 자연적(natural) 지원의 증가
- 학교 기반 조기 개입
- 심터 전환
-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
- 성착취예방 및 관리

#### **〈케어 시스템〉**

- 통합적 서비스, 통합 시스템
- 협력적인 참여
- 사례관리

### **Eviction Prevention (퇴거 예방)**

- 법적 보호체계 강화
-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정보와 자문 제공
- 입주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제공
- 법률, 자문, 설명에 대한 접근 가능
- 정확하고 적절한 시점의 위기개입

### **Housing Stabilization (주거 안정화)**

- 주거지원
- 건강과 복지
- 소득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 보완적인 지원
- 사회적 포용

### **Duty to assist (지원 의무)**

## ② 하우스 퍼스트의 보편적 실현으로 홈리스 감소 효과를 보고 있는 예 - 핀란드

핀란드는 하우스 퍼스트 정책을 통해 EU국가 중 홈리스 비율을 유일하게 떨어트리고 있는 국가이다. 하우스 퍼스트 정책의 목적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의 대상은 홈리스인 성인 뿐 아니라 장기적 주거생활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나 가족, 독립을 원하는 청소년 그리고 만 21세가 되어 아동 복지 서비스가 종료된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sup>62)</sup>

핀란드는 만 18~29세 사이의 독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독특한 청년 전용 주택 시스템(핀란드 청년주택협회 운영)이 있다. 핀란드청년주택협회(Finnish Youth Housing Association: NAL)는 만 30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며 독립적 주거를 제공하는 비정부, 비영리 단체이다.<sup>63)</sup>

## ③ 민간 영역(NGO)에서 하우스 퍼스트를 실험하고 있는 예 -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 ㉠ Rock Trust (스코틀랜드)<sup>64)</sup>

Rock Trust는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단체로 청소년 홈리스 상태를 끝내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주택, 교육 및 고용 지원을 포함한다. Rock Trust는 4년 동안 FEANTSA(유럽 홈리스 관련 국가기구의 연합) 청소년 연구 세션에 참여해왔다. 그들의 연구 세션 참여는 서비스 제공을 “계단 모델”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하우스 퍼스트 시행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Rock Trust는 자체 숙소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기존에는 “계단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계단 모델”은 사회적 자활의 성과를 한 단계씩 이루어 가면 최종적으로 독립된 주거를 보장하는 형태로, 모든 홈리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Rock Trust는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 퍼스트를 위해 분산형 주택을 도입하여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려 했다. 이는 추가 주택 설립이 필요한 일이었다. Rock Trust는 지원 주택으로 이사는 젊은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62) Ministry of the Environment, Finland (2016)

63) NAL "home of your own: a young person's guide to independence 2019-2020"

64) FEANTSA(2016), [Homeless in Europe].

Rock Trust는 기존에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이력과 경험이 있었지만, 하우스링 퍼스트로의 전환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모든 조직에서 변화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로 이행한다고 해서 과거의 서비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로 전환이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Rock Trust는 젊은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경영진에 주장했다. 반면에 이사회에 대해서는 하우스링 퍼스트를 적용하는 최초의 조직이 되고 그 분야에서 조직이 지위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Focus Ireland (아일랜드)<sup>65)</sup>

포커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대표적인 홈리스 및 주거 NGO 중 하나로, 홈리스나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포커스 아일랜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 서비스를 워터포드, 리머릭, 더블린에서 제공하고 있다.

워터포드는 인구 5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 남동부에 있는 도시로 포커스 아일랜드는 거의 20년 동안 광범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포커스 아일랜드는 더블린에서 성공한 사후관리를 워터포드에서도 실천했지만, 워터포드의 청소년에게서 효과의 큰 차이를 발견했다. 사후관리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거나, 사후관리를 떠난 복잡한 요구를 가진 많은 청소년들이 특히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류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전통적인 홈리스 서비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하우스링 퍼스트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 원칙을 통해 청소년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아서 종종 청소년들의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대신 하우스링 퍼스트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실수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두 가지 장애물 또는 과제가 있다. 우선 주택이 부족한 아일랜드에서, 청소년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회주택에 의존하여

65) FEANTSA(2016), [Homeless in Europe].

주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택도 독신자 보다는 가정이 있는 경우를 우선순위로 놓기 때문에 홈리스가 될 취약한 청소년들이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한편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고려하면 주거권이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주거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취약한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이웃들의 반대였다. 입주자들은 편견을 경험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된다. 입주자들은 홈파티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이웃들이 참지 않는다는 점 등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사는 법을 배운다. 해악의 감소는 서비스의 중요한 초석이다. 이것은 주거를 잃을 수 있는 활동과 행동을 줄이는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하는 대신에, 친구 한 두 명을 초대해서 입주자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 2) 그 밖의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외국에서도 탈가정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기반의 주거정책이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공동생활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형태부터 보다 하우스 퍼스트 취지에 가까운 형태까지, 국가와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1] 프랑스<sup>66)</sup>

#### ① 근로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Residences Jeunes Travailleurs)

만 18세 이상 만 26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다. 이 정책은 프랑스 국영신탁예금(Caisse de Depot)의 청소년 보금자리마련 기금으로 운영되며 프랑스 전역에서 상호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RJT는 파리와 파리주변 지역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에 7,000개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

6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② 프랑스 가족수당센터가 운영하는 '단기 임대지원(Allocation au logement temporaire)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정책이다. 이 정책은 이름 그대로 단기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물면서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찾고 있거나 이미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숙소에서는 최대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주거지원금의 형태로도 운영되는데, 본 정책의 특징은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지원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근로 청소년 포아예(Le foyer de jeunes travailleurs)

만 16~25세 청소년 중 직업교육이나 실습을 받고 있는 무연고 청소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FJT는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듯 '어떤 직업교육이라도 받고 있는 청소년'이 주요 지원대상이지만, 각 숙소 방침에 따라 청소년 구직자와 대학생도 입소할 수 있다. 파리에 46개의 숙소를 비롯해서 파리 위성도시에 129개가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걸쳐 446개의 숙소가 있다. 숙소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다.

## ④ 청소년 포아예(Le Foyer de jeunes)

교육부, 주거부, 보건부, 노동부, 사회연대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연계되어 운영하는 청소년 포아예는 만 16~30세의 탈가정 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취업한 근로자, 직업교육생, 구직자, 학생 등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숙소에서 거주하더라도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기관은 정부기관이지만 민간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숙소와 거주 협회(Association des residences et des foyers jeunes)는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숙소와 거주지를 연결시켜 준다.

## [2] 영국

영국 정부는 포괄적인 입법 외에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50개 이상의 기업, 정부의 모든 부처 및 부서, 그 외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지원 약

정(Care Leaver Covenant)을 맺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① 센터포인트(Centrepoint)<sup>67)</sup>

센터포인트는 영국에서 관련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민간 설립 봉사기관으로, 9,200명 이상 홈리스 청소년 지원하고 있다. 센터포인트에는 홈리스 또는 홈리스의 위협이 있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소한다. 입소자들은 매주 숙박비를 지불하며 이를 연체해서는 안 된다. 대신 숙박비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숙박비를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재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기 호스텔과 장기 숙박 거주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센터포인트는 만 16~25세 홈리스 청소년들의 학업과 취업훈련, 근로 현장 재적응을 위해 숙소, 의료, 생활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립이다. 특히 취업이 자립에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진로 준비를 위해 학습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학과 영어 등 기초과목 외에 독립생활을 위한 예산 작성 등 생활기술, 직업체험, 문화활동 등도 지원한다.

### ② 포이어 연합 (Foyer federation)<sup>68)</sup>

포이어 연합은 1992년 창설되었으며, 정부 예산이 일부 투입되긴 하지만 주로 재단 자체 예산 및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포이어는 만 16~25세 홈리스 청소년에게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다차원적인 전환프로그램(주거수당, 학습 및 기능훈련, 취업지원, 자산관리교육, 정신 및 건강지원, 생활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영국 전역에 약 120여 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매년 약 1만 명의 홈리스 청소년에게 주거 및 취업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학습프로그램과 숙박센터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포이어 외에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호스텔’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포이어 연합 역시 근로를 통해 홈리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홈리스 청소년

6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68) Foyer Federation (<https://foyer.net/about-us/>)

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홈리스 청소년이 줄지 않고, 입소자가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고용과 연계하여 주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과 직업훈련을 실패하면 더 이상 포이어 입주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주거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 4) 관리수반아파트

### (1) 미국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Grant Program: TLP)은 홈리스 청소년 중 가정복귀가 불가능하고 아직 자립이 어려운 만 16~22세 청소년을 대상 안전한 숙소와 사회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TLP는 만 16~22세의 홈리스 청소년을 상대로 18개월 간(필요 시 기간 연장) 안전한 주거 생활 교육을 지원한다. 또 18개월이 지났을 시점에서 만 18세가 안 된 경우, 만 18세 생일까지 머물 수 있다. 만 22세가 되기 전에 TLP의 지원을 받은 경우 18개월에 한해서 만 22세가 지나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임신하였거나 아이가 있는 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태로는 그룹홈(구조화된 환경, 가장 일반적), 위탁가정(host family home), 모자보호시설(maternity group home), 감독자가 있는 공동 숙소/관리수반 아파트(Supervised apartment living: SAL)가 있다.<sup>69)</sup>

이 중 관리수반아파트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지역사회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한다. 관리수반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감독자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독립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을 방문하는데 초기에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자주 방문하는 형태에서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정도에 따라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점차 방문횟

6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Transitional Living Program Fact Sheet" (<https://www.yhma.org/programs/independent-living/>)

수를 줄여나가게 된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해당 숙소에서 그대로 살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sup>70)</sup>

기관 소유 아파트는 개인별 공간을 제공하는데 종사자는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단지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 형태 아파트는 한 곳에 모여 있기보다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이 부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관리수반아파트로는 “Youth Homes of Mid-America”와 “The Impact”가 있다. Youth homes of Mid-America는 복합단지에서는 만 16.5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24시간 지원 가능한 종사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분산형태 아파트에서는 만 17세 이상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대신 상담사와 연락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sup>71)</sup>

“The Impact”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Project LIFE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8세 이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탁가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사례관리를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sup>72)</sup>

---

70) Parents' Foundation for TransitionalLiving, Inc.

(<https://www.parentsfoundation.com/supervised.htm>)

71) Youth Homes of Mid-America (<https://www.yhma.org/programs/independent-living/>)

72) The Impact Project (<https://www.theimpactprojectinc.net/supervised-apartment-living/>)

### 3. 주거급여

#### 1) 국가별 정책과 현황

##### (1) 미국

###### ① 가족결합 바우처 프로그램 (Family Unification Program, FUP)<sup>73)</sup>

위탁보육의 상황에 처한 아동이 본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가족결합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래는 자녀를 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으나, 「공공법(Public Law)」 개정으로 2000년도부터 만 18~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18개월 간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정소득의 30%만을 월세로 지불하도록 설계하고, 「주택개혁법」이 2016년 시행되면서 가족결합 바우처 사용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24세로 상향하고, 그 기간도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공공주거 및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 (Public Housing and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sup>74)</sup>

가족결합 바우처를 받지 못한 개인이나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입자가 자신의 총소득의 30% 범위에서 월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실제 월세에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 i. 공공주택 지원(the Public Housing Program): 세입자가 지방 공공주택기관이 소유하는 곳에 살며, 자신의 총소득의 30%정도에 이르는 금액만 월세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ii. 주거선택 바우처(the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HCV):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총소득의 30%까지만 월세로 지불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73) 국회입법조사처(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8호, p.51

74) Housing for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2012)

## [2] 영국

아동이 시설을 퇴소할 때는 이사 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 퇴소 보조금(Leaving Care Grant)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조금은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개별 상황에 따라 주거 보조, 수입 보조, 실업 보조 등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sup>75)</sup>

## [3] 프랑스

「2001년 7월 4일 법」은 만 16~25세 청소년 자립 수당(Allocation d'autonomie pour les jeunes de 16 a 25 ans)에 관한 것이다. 탈가정 청소년을 비롯해서 가정 및 사회로부터 격리 직전에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체적인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sup>76)</sup>

## [3] 북유럽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원이 폭넓고 홈리스를 위한 정책도 장기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또 만 17세 이후의 시민권 및 영주권자는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거 유지를 위한 보충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 15~16세인 경우도 부모의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 교재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sup>77)</sup> 핀란드 환경부의 주택기금(Housing Fund of Finland: ARA)은 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하고, 만 18-39살에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에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sup>78)</sup>

---

75) Leaving foster or local authority care  
(<https://www.gov.uk/leaving-foster-or-local-authority-care>)

7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77) Kela, "Financial aid for students" (<https://www.kela.fi/web/en/financial-aid-for-students>)

78) NAL [home of your own: a young person's guide to independence 2019-2020]

## 4. 요보호아동을 위한 주거

### 1)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 (1) 영국<sup>79)</sup>

2000년 「보호종료 아동법(The Children Leaving Care Act)」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지정하고, 주거 관련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보호종료 아동법」의 주요 지원 대상자(Eligible Child)는 만 14세 이후 최소 13주 동안 보호를 받고 자란 만 16~17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대상자(Relevant Child)는 만 16~17세 청소년 중 돌봄을 받다가 독립한 청소년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중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을 추구하는 청소년이다.

2013년에는 보호종료전략(Care Leaver Strategy 2013)을 발표했다. 총 여덟 개 부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보호종료전략'은 「2000년 아동법(Children Act 2000)」의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 고용, 경제적 지원, 건강, 주거, 법률, 지속적 지원 분야로 세분화하여 지금까지 각 부분에서의 지원 내용과 결과, 이후의 진행 계획, 영향의 평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현재의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은 2018년 4월부터 「2017년 아동·사회사업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보호종료전략', 「2008년 아동청소년법」, 「2014년 아동가족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세부 내용은 2016년 7월 정부에서 발간한 '지속적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Keep on Caring - Supporting Young People from Care to Independence)'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정책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용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운영체계는 교육부가 주요 담당기관으로, 주거·고용·복지 등 관련 도움은 해당 부처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시행은 각 지방정부에서, 모니터링은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에서 한다.

---

79) Leaving foster or local authority care,  
(<https://www.gov.uk/leaving-foster-or-local-authority-care>)

또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상이 교육 및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만 25세까지(이전에는 기본 만 21세, 교육 중이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만 25세였음)로 확대되었다. 청소년은 만 16세가 되면 보호종료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가 종료되면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개별 사례관리사를 배정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만 25세까지 지방정부 및 개별 사례관리사(Personal Advisor)로부터 연 1회 의무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 외에도 필요 시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사례관리사를 통하여 만 16세 이후부터 종료계획(Pathway Plan)을 세우고 만 18세 퇴소 시 거주지 및 여유자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만 21세까지 원하는 아동에게 위탁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례관리사는 청소년의 효과적 자립을 위한 6가지 지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6가지 지원은 취업 교육 및 훈련, 재정능력, 신체 및 정신 건강, 사법제도, 회복탄력성 및 자존감 구축, 주거지원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거지원의 대상은 「홈리스감소법 2017 (The Homelessness Reduction Act 2017)」의 청소년 지원규정이 적용된다. 즉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만 16~17세 무연고 청소년, 만16~18세 시설보호 이후 보호 종료된 만 21세 이하 청소년, 만 16~18세 사이 시설보호를 받았으나 보호 종결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만 21세 이상인 자, 폭력 피해자, 「가족법 2014」상 가정을 떠나 사회적 돌봄을 받는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인-임차인 관계 중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거주 공간도 공공, 민간, 전통적 시설, 독립된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제공하여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sup>80)</sup>

## [2] 독일

독일에서는 21세가 되면 시설 또는 위탁가정을 떠나 자립을 하게 되어 있다. 함부르크의 HOME Support는 이때 처음으로 구하는 주거의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HOME Support에 오는 청소년 대부분은 재정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단체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후기 청소년을 돕고, 직업상담이나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sup>81)</sup>

80) Uniting Care(2014), [A strong future for young people leaving out-of-home care].

## 2) 탈시설화

### [1] 이탈리아<sup>82)</sup>

#### ① The Murialdo Association (Padua)

19세기 말, 요셉회 모임에서 그룹홈 형태인 “family house”를 열어 집이 없는 어린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다. 그 이후 탈시설화의 진행으로 대규모 시설이 폐쇄되면서 집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증가했다. Murialdo Association은 이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위탁가정을 집이 필요한 아이나 청년과 매칭시키는 일을 했다.

#### ② Martinitt Institute (Milan)

Martinitt Institute는 원래 고아원이었지만, 규모를 줄여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단체는 주로 난민들을 위한 긴급개입, 경찰이나 사회복지사가 위탁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휴식처, 그룹홈 생활을 거부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낮에 모이는 데이센터를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 ③ Group-apartments of Emilia Romagna

1970년대에 볼로냐 대학의 심리학과와 여러 사회복지사가 힘을 모아 "Group Apartment"를 시험해보았다. "Group Apartment"의 목적은 대형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시설 밖에서 성인 롤모델 없이 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동·청소년이 작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이제는 한군데만 남았지만 이 시도는 이탈리아 북부지방인 Emilia Romagna의 시설 관련 정책개발에 계속 참고가 되고 있다.

---

81) FEANTSA(2016) [Youth Homelessness in Germany Prevention and Case Studies].

82) Innocenti Research Centre Innocenti Insight "CHILDREN IN INSTITUTIONS: THE BEGINNING OF THE END?"

## 5. 정리

청소년 주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지원에 있어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본으로 법정책을 마련하기보다, 홈리스 상태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기반한 법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홈리스 상태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라는 기조는,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탈가정한 청소년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탈가정 초기부터 청소년에게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안전한 공간에서 원가정 복귀 혹은 자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주거지원의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임을 전제로 청소년에게 공동생활이 아닌 단독주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위 나라들에서는 탈가정 청소년의 상태에 주목한 ‘홈리스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하우스링 퍼스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이들 시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주거권이 논의되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의 주거권은 국가 전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논의의 국면이 크게 좌우되기도 했다.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홈리스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우선지원정책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보편화 되어있어, 굳이 ‘청소년’의 주거권을 별도로 논의하는 흐름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 IV. ‘이미’와 ‘아직’ 사이 : 청소년 주거권 현장연구

## 1. 들어가며

### 1) 문제 제기

청소년 보호 시설 중에는 주거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왜 이들은 시설에 머물지 않고 시설이 아닌 주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새로운 시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시도들이 청소년 주거권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직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주거권은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말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 현실에서 청소년 주거권은 낯설기만 한 권리이다. 탈가정 청소년에게 주거문제는 매일 부딪치는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거권은 사회적으로 의미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시설 중에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 시설을 넘어 주거 문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하는 현장이 이미 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이하 청주넷)는 2019년에 주거권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이들 단체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가출 청소년’ 수는 21,852명이다. 그러나 이는 가출신고 및 범죄 등 접수가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실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약 8~ 10%만이 이 통계에 해당된다. 2018년 여성가족부는 연간 ‘가출 청소년’ 수를 약 27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 중 쉼터 이용 청소년은 3만 2천명 이라고 한다.

집을 나온 청소년을 표현할 때 가장 익숙하고 알려진 단어는 ‘가출 청소년’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출 청소년’은 비행 또는 문제 청소년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감히’ 집을 나올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에게 ‘가출’을 할 만큼 큰 일이

있을 리가 없으며 ‘가출’은 고생인 줄도 모르고 부모 속 썩이는 ‘철없는’ 행동일 뿐이다. 집을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책 없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집 나온 이유에 대해 비청소년인 나를 납득시켜라. 이런 주문은 비청소년과 이 사회가 인정한 서사가 아니면 ‘가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오죽 하면 애가 집을 나왔겠냐’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된다. 청소년이 집을 나올 만한 이유로 인정되는 내용은 부모의 폭력과 방임으로 제한된다.

통계청에서 나온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청소년의 가출원인은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이 70.0%로 가장 많고 기타 11.1%.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7.1%,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3.9%였다. 이 사회는 ‘가족갈등’이라는 단어에 숨은 청소년들의 삶의 곁을 세세히 헤아릴 만큼 이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을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가정사를 들어도 자신의 고정관념과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다. ‘갈등’이라는 말은 뭔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족과의 어려움을 너무 가볍게 느끼게 만드는 단어로 들린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다면 청소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우니 비청소년의 보호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이 사회는 말한다. 보호시설로 갈 수 있고 가야 한다는 국가가 정한 방법이 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청소년 쉼터 유형별, 퇴소사유별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쉼터를 찾은 2만 9,256명의 청소년 중 55.9%인 1만 6,352명이 무단이탈, 자의 퇴소, 무단 퇴소 등 제 발로 쉼터를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보호시설로 가고 싶지 않다면 거주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 할 문제가 된다.

청소년 주거권 논의의 출발은 ‘집을 나온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만약 집을 나온 이유를 궁금해 한다면 그것은 탈가정 이후 청소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지 집을 나온 이유의 적합성을 비청소년이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집을 나온 상태’에 주목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 질문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를 묻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이 질문은 할 수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보호 시설 외에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제안할 내용도 없다. 청주넷의 고민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고민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겐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다른 질문을 하면 해결방안이나 대책도 달라진다.

청주넷은 다음과 같은 탈가정 청소년의 현실과 상황에 주목한다. 탈가정 이후 쉼터에 가고 싶지 않거나 못 가는 청소년이 있다. 비청소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청소년이 있다. 그러나 갈 곳도 방법도 없다. 비청소년과 함께 살고 싶거나 한동안 살아야 하는 청소년이 있다. 하지만 정해진 관계와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아무나’가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다. 그렇다면 비청소년과 청소년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 것인가?

주거권은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이다. 살만한 집은 바람과 햇빛, 넓이, 사생활 보호와 접근성 등 살기에 적합한 공간 특성을 의미한다. 집은 물리적 공간이자 관계의 장소이다. 누구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집 같은 집’의 의미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보호시설은 청소년에게 집일까? 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여야 할까? 공동생활에 규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율되어야 할까?

물리적 공간의 특성과 관계의 거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2019년에 만난 보호시설 중에는 청소년과 이런 고민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기관들이 있다. 이 글은 이들의 고민과 시도의 결을 잘 살피면서 청주넷의 2019년 고민을 연결해 정리하고자 한다.

## 2) 조사 방법

청주넷에서 2019년에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소년 보호시설은 일시 쉼터, 청소년지원 시설, 그리고 그룹홈을 포함해 여러 형태의 보호시설과 대안 공간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이 기관들은 시설을 넘어 주거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생활 시설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아동양육시설이다. B 시설은 주거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되는 문제의식이 있어 인터뷰를 했고 본문에 내용을 정리했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 보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명확한 질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인터뷰 참여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조사였다. 청소년 시설 중에 주거와 자립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을 찾으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의 고민과 시도의 경로와 이유이다. 청주넷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현장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찾은 청소년 시설이다. 사실 청주넷은 이런 고민과 시도를 하는 더 많은 현장을 찾고 싶었다. 이점은 우리에게겐 아쉬운 부분이자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글은 최대한 인터뷰 자료를 본문에 인용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후 계속 진행할 청소년 주거권 논의에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를 요약하지 않고 충분히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 기관과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7] 인터뷰 참여 기관 및 참여자 정보

이름(기명포함)	기관	경력	비고
이수연	일시 쉼터	2013년~ 현재	일시 쉼터와 셰어하우스 두 곳 교대 근무
김현서	A 청소년지원시설	2012년~ 현재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98년 개소) 파트타임 상담원으로 3년 근무 쉼터의 청소년지원시설 전환 후 근무
한선우	A 청소년지원시설	2014년~ 현재	
조희진	들꽃청소년세상	94년~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룹홈으로 시작해서 대안학교, 자립팜, 거리 청소년을 위한 이동식 버스 청소년센터 엑시트 등이 있다.
김민정	B 아동양육시설	2013년~현재	

## 2. 변화된 환경과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시설의 고민과 응답

### 1) 시설의 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청소년 현장의 변화를 가장 많이 오래 제기한 집단은 아마도 탈가정 청소년 당사자일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청소년들은 오늘 머문 시설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아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반복해 왔다. 보호시설을 포함해 청소년 기관 실무자들의 변화를 위한 시도들도 있다. 청소년 현장 중에는 변화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청소년의 문제제기를 함께 고민해 온 곳들이 있다. 이런 현장들은 청소년이 시설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시설이 청소년의 욕구와 목소리에 적응하면서 예민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 보호시설의 실무자들은 현재의 변화를 어떻게 읽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관찰한 청소년의 상태와 변화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새로운 생각과 시도는 현재 발을 딛고 있는 보호시설에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비판적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탈가정 청소년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이러한 변화를 적용하는 과정은 주거와 자립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어떻게 연결될까?

#### (1) 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청소년

일시 쉼터 실무자인 이수연은 청소년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사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욕구파악은 모든 서비스의 조건이자 내용이지만 누구의 위치에서 어떤 관점으로 욕구파악을 하는지에 따라 내용은 확연히 달라진다. 이수연은 탈가정 청소년의 ‘가출의 원인’보다 ‘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시작한다. 그녀는 쉼터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문제적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시설이 처한 현실을 직면하고 질문을 던진다.

---

도대체 탈가정 청소년들은 왜 거리에서 사는가? 부천역에 탈가정 청소년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밤늦게 나와 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탈가정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기 일시 쉼터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요. 저희 일시 쉼터는 2013년 10월에 생겼어요. 저는 청소년 사례 관리와 상담 기록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고민을 했어요. 청소년 쉼터의 의미와 청소년의 쉼터 경험에 대해. 쉼터에는 T.O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안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청소년이 원하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원인 보다 거리의 고착 또는 유지 기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이수연)

사실 쉼터에 가고 싶지 않은 청소년의 존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 현장에서 줄곧 해 온,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고 많은 청소년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처럼 세팅 된 쉼터에 적응한,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은 쉼터에 남고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은 갈 곳이 없지만 떠난다. 문제 인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수연이 강조하는 청소년 쉼터의 문제 중 하나는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안 되는 것이다. 그녀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은 청소년이 다 다르고 욕구도 다양하다는 점이다. 욕구의 실현은 환경과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제약을 받을 뿐, 욕구 생성이야말로 처한 환경과 그 변화에 민감한 영역이다. 사실 지금은 탈가정 청소년이 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선택은 선택 가능한 목록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는데 이들의 선택에는 후보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수연은 탈가정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선우는 시설을 나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거처”없이, 일단 지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위험한 관계에 손을 내미는 현실에 대해 말한다.

---

전에 청소년들과 얘기를 했는데 어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청소년들 중에 어른들과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너희의 간섭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인 쉼터에 적응한 사람들이 거기에 남는 거죠. 적응하지 못하면 다 튕겨져 나오고. 저는 쉼터가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도 다 성격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탈가정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도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선택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수연)

---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청소년들의 입을 통해서 여기를 나가고 싶어 할 때 요인은 많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살기 힘들어서 나가거나, 살 곳이 생겨서 나가거나. 여기서 살기 힘든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고 나가서 살 곳이 생겼다고 하는 것도 각자 상황이 다르겠죠.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경험상 안정적인 거처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청소년은 비율이 낮아요.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이 시설 밖에 관계 때문에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나쁜 인간인데 “나랑 같이 살래?” 하면 나가는 거죠. (한선우)

## (2) 쉼터에서 거부당한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강제 퇴소는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특정 청소년의 입소를 받지 않는 보호시설이 있다고 실무자들은 말한다. 입소거부는 직접적이지는 않다. T.O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청소년이라 쉼터에서 받지 않는 것이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들어와서 다른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청소년, 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해당된다.

---

정신과에 다녔거나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쉼터에서 받았을 때 종사자가 못 보는 사이에 다른 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들의 입소 자체를 안 받는 쉼터가 있어요.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쉼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황파악이 되면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을 안 받죠. 쉼터에서 이 청소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생각보다 쉼터에서 입소가 거부된 친구들이 많아요. 못 받는다고 못하니까 자리가 없다고 해요. 이런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수연)

---

저도 특정 청소년의 입소를 안 받는 시설이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쫓 그래요. 그럴 거면 뭐 하러 이 일을 하나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한 명 때문에 아홉이 희생 된다는 논리를 들으면 고민이 되고 밀려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공감미 돼요. 종사자들의 소진 문제도 있고요. 종사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기관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관된 문제겠죠. (한선우)

---

저희는 청소년 입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여기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입소 예정인 청소년의 정보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입소하면 일이 많이 생길거라고 과장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입소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이 공간을 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얘길 하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친구들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김현서)

첫째, 실무자들은 모두 청소년 현장에서 특정 청소년에 대한 입소 거부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둘째, 이들은 입소 거부해서는 안 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한다. 한선우는 이것이 실무자 개인의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라 청소년 기관의 지향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임을 말한다. 셋째, 쉼터에 입소조차 안 되는 청소년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청주넷의 질문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조건에서 쉼터 실무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일상에서 겪는 문제일 것이다. 이수연은 쉼터 실무자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

실무자가 청소년보다 많고 여력이 되면 기관에서 더 힘든 청소년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개별 쉼터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인력이 부족한 거 사실이니까요. 야간에 애들 관리가 안 돼요. 단기 쉼터도 종사자가 한 명이잖아요. 야간에 저희도 종사자가 한명이었다가 지금 두 명이예요. 한명 더 총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자애들이 기물파손을 하거나 서로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하고 몸싸움도 하고요. 개별 청소년 기관 실무자들에게 ‘그건 니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실무자 인원이 더 필요해요. (이수연)

### (3) 어떤 공동생활과 불안정한 거주

쉼터의 실무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인력이 늘어난다고 탈가정 청소년의 거주 불안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거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쉼터라는 공간의 특성이 상수로 존재한다. 첫 번째가 공동생활의

문제이다. 모든 공동생활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출발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이 공간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수연은 쉼터의 공동생활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는 탈가정 청소년이 겪는 경험에서 나온 특성이다. 가족이 힘들어서 집을 나왔는데 낯선 누군가와 새로운 공간에서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청소년만이 가진 두려움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누구라도 느낄 수 있다. 탈가정 청소년은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갈 곳이 없어 머물렀던 거리에서 이미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지냈고 경제심 높은 상태로 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둘째는 시설의 규모 문제이다. 이수연은 열 명이 넘으면 집이 아니라고 말한다. 첫 번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열 명은 안정적인 삶을 누리다 쉼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쉼터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가 안 된다. 특히 일시 쉼터처럼 잦은 이동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더 복잡해진다. 가능한 선택으로 대표적인 것이 강제된 규칙이다. 위계적 관계를 통해 통제하는 방식도 연결해서 등장한다. 이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다룰 것이다. 우리는 쉼터의 물리적 특성 즉 독립 공간이 없다는 점이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내용도 뒤에서 다룰 것이다.

---

쉼터를 가면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탈가정 청소년은 가족과 사는 게 힘들어서 집을 나온 건데 공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가족 안에서 살았겠죠. 청소년들이 쉼터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규칙 문제도 있지만 낯설음에 대한 적응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쉼터에 있다는 낙인감도 있고요. 쉼터에 무서운 형, 누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쉼터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쉼터 선생님들이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청소년에겐 낯선 사람이잖아요. 이곳에 나만 혼자 던져진 기분. 청소년이 느끼는 낯설음이 저는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이수연)

---

저희 쉼터는 최대 20명까지 청소년을 받을 수 있어요.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렇게까지 청소년을 받지는 않지만 요즘은 보통 청소년이 10명 정도예요. 같이 사는 청소년이 10명이 넘으면 거기는 집이 아니라 시설인거죠. 거기에는 규칙이 필요하게 되고 10명의 개별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애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애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에 맞게 대할

때도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옆 친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죠. 최대한 개별성을 보장해 주고 싶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쉼터 체계에서는 어렵죠.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면 많은 청소년이 한 공간에 지내는 게 아니라 처음엔 혼자나 소수의 사람과 지내다가 안정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수연)

일시 쉼터는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오고 간다. 일시 쉼터에는 단기 쉼터에서 입소 거부 되었거나 강제 퇴소를 당한 청소년, 단기 쉼터에 가고 싶지 않은 청소년, 폭력 및 방임 피해 청소년 등 다양한 삶의 결을 가진 청소년이 온다.

---

저희는 일시 쉼터라서 청소년이 한번 들어오면 일주일 있는 게 가능해요. 원래는 3일 있다가 행정 상 퇴소처리를 하고 다시 입소 처리를 해서 들어오는 거였는데 청소년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보호 기간을 1주일로 늘렸어요. 일시 쉼터는 단기 쉼터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청소년도 오고 강제 퇴소 당한 친구도 있어요. 저희는 다른 쉼터에서 강제 퇴소 당한 청소년도 꽤 받거든요. 지금 상황은 쉼터 입소자 특성에서 피해자 쉼터와 단기 쉼터가 딱히 구분이 안 돼요. 저희 지역에는 일시 보호소가 없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폭력 피해 청소년을 안양으로 보내는데 T.O가 없어서 거기는 2-3주 기다려야 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학대 청소년이 들어오면 저희 쉼터로 데리고 와요. 초등학교생들도 오는데 저희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는 가정처럼 아이를 보호하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제공해야 할 서비스도 지내는 환경도 달라야 하잖아요.

저희는 강제퇴소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 청소년을 더 이상 알지 않겠다는,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못 오게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청소년이 있으면 그 청소년과 얘기해서 2-3개월 못 오게 하고 다시 받거든요. 보호 기간은 쉼터마다 달라요. 3일도 있고 5일도 있어요. 한 달에 며칠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만약 한 달에 열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원하는 날짜에 가서 열흘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수연)

일시 쉼터를 돌아다니는 청소년 ‘유랑자들’은 일시 쉼터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유랑자들은 거주 불안정을 겪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들의 전략은 생존을 위한 것이자 있는 조건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적 행위이다. 일시 쉼터 뿐 아니라 청소년지원시설에 가는 십대 여성들도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정보에 근거 해 시설을 선택한다고 한다. 아마도 탈가정한 청소년

년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정보이기에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시 쉼터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다른 일시 쉼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리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

쉼터에 오는 청소년들 보면 쉼터를 한 곳만 다니지 않아요. 저희 쉼터에 일주일 있다가 다른 곳들을 돌아다녀요. 경기권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청소년마다 선호하는 쉼터가 다른 거죠. 어디는 밥이 맛있고, 어디는 노래방이 있어서 놀기 좋고 어디 쉼터 선생님은 착하고, 선생님들이 착하다는 건 좀 느슨한 거지. 청소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쉼터마다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죠. 쉼터 쇼핑이지.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시 쉼터는 불안정한 주거죠. 내 짐을 들고 철새처럼 움직여야 하잖아요. 거리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유로움을 맛보거든요. 가출해서 거리에서 지내면 신세계가 열려요. 그런 다음에는 쉼터 적응이 어려워요. 일시 쉼터는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여기서 친해진 사람들의 교류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금방 터득하게 되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굳이 규칙이 있는 쉼터로 가고 싶지 않죠. 다른 선택이 필요해요.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쉼어하우스 같은 곳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 텐데요. (이수연)

---

서울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그 정보로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피해 상황을 경험해서 어떤 상담소나 여러 연계 기관에 가서 상담 받다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재판을 받아서 보호처분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오죠. 이들의 이력을 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정폭력이나 방임이 많이 있죠. 가정의 기능이 무너진 집에서 온 청소년들이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죠. (김현서)

불안정한 거주 경험은 불안정한 삶의 연속을 의미한다. 거주든 주거든 사는 곳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삶의 불안정성은 예측이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 집중하기에도 벅차다. 주거 문제는 오늘 당장 잘 곳이 없는 버거운 현실 일 뿐 아니라 정착할 수 없는 삶을 의미한다.

#### (4) 쉼터나 시설 운영 규칙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 현장들은 규칙의 최소화와 변동가능성을 전제로 끊임없이 청소년과 얘기하면서 규칙을 없애고 만들고 조정하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이런 운영규칙을 가진 청소년 시설은 드물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연일까? 규칙이 개인과 집단에 적용되는 기준점이라면 누가 어떤 관점으로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지가 중요해진다. 청소년들은 비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치를 바꾸기 위한 시도들을 했다. 규칙이 구성원들의 행위 가능성을 상호적으로 규정하는 약속이라면 이것은 일방적일 수 없다. 일방적인 것은 강제적인 성격을 띤다. 타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런 규칙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파괴한다. 거기엔 개인의 주체성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 기관들은 시설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함께 살기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기관은 청소년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는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적당하게 눈치를 봐야 한다. 서로의 욕구와 반응에 민감해져야 한다. 이수연은 쉼터의 규칙 변화로 인해 입소 청소년 수가 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시설의 규칙이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얘기한다. 주로 비청소년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 고정되면 문제가 된다.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지 않는 규칙이 되려면 변동가능성이 필요하다

---

저희 쉼터가 한동안 입소 청소년이 되게 적었어요. 알아보니 저희가 적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규칙을 완화했더니 청소년이 확 늘어났어요. 핸드폰은 원래 안 걸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담배가 커드라고요. 담배 규제를 풀었더니 청소년이 확 늘었어요. 쉼터에 가고 싶지 않는 이유에는 규칙이 크긴 하죠. 쉼터에 처음 와서 낯설음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자기를 간섭하는 규칙까지 더해지니까.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는데 규칙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청소년 본인이 만든 규칙도 아니고 주어진 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쉼터에 살려면 규칙을 강요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출팸도 규칙은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건 규칙으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건 자기가 함께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규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칙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규칙이 얼마나 유연한지, 변화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저희 쉼터는 담배를 제한하지 않아요. 2시간에 한번 씩 피울 수 있게 하다가 지금은 청소년이 담배를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도 내지 않고요. 담배 자유롭게 핸드폰 반납 안 하는 쉼터는 드물죠. 저희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주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희도 편하고요. 두 시간에 한번 씩 청소년들이 담배 핀다고 가지러 오면 그거 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이나 갈취, 빙뜬기나 물물교환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조차도 종사자들이 더 신경 쓰고 살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진행 해 보고 평가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수연)

A 청소년지원시설의 실무자인 한선우도 시설의 규칙 변화를 얘기한다.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되어야 할 내용이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한다. 규칙의 의미와 내용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정해진 규칙의 내용을 보면서 그 의미를 따져 봐야 한다. 이것은 도대체 왜 규칙이어야 하는가? 규칙의 목적이 정해지면 내용이 달라진다. 김현서에 의하면 기관이 “함께 살기 위해 청소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규칙의 의미도 변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규칙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규칙의 의미는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의 주제이자 함께 하는 공간에서 청소년을 주체로 서게 하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자립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한선우는 청소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선택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

98년도에 쉼터가 생기고 함께 지내는 청소년이 많아지니까 생활동의를 같은 형태를 만들어 갔어요. 20개 정도 문항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 방식을 유지했는데 5년 전부터 생활규칙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20개 문항 중에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설거지를 한다’, ‘자기가 먹은 컵은 치운다’, 등이 있었는데 싹 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인데 살면서 배우고 하게 되는 건데 문항으로 넣는 순간 의무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의 불편함이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지원시설인데 청소년이 규칙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원론적인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인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기관에 와서 인권감수성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지원시설이면 청소년이 이곳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표현 보다는 모든 것이 선택이어야 하는 거죠. (한선우)

---

전에는 규칙을 지켜야 여기서 살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규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고민해 왔어요. 함께 살기라는 주제를 고민하면서 규칙이 일괄 적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걸로 저희 기관은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규칙을 세울 때 나름의 원칙은 '누구든 규칙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예요. 의견과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규칙이 자주 바뀌는 거죠. 규칙은 고정된 게 아니예요. (김현서)

한선우에 의하면 청소년지원시설에 오는 청소년의 특징이 달라졌고 이것은 사회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환경과 주체의 변화는 시설 운영규칙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중요해진다. 박제된 규칙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향할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때 규칙은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자 실천이 된다. 그래서 규칙은 변경 가능해야 하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입소한 청소년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살고 있는 공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과정이 된다. 공간의 특성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고정된 규칙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가 새겨져 있지 않다. 요청된 변화에 응답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

피해 청소년 연령도 낮아지고 예전과는 다른 경험을 한 피해 청소년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규칙의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과 자주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약속은 무엇일까? 매년 규칙이 변했고 올해 초에는 확 풀어진 상황이 됐죠. 2019년 8월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약속 내용은 함께 살기 주제와 연관된 가치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됐어요. 5년 정도 끊임없이 청소년들에게 맞춰 규칙의 변화가 있었어요.

청소년에게 자율성과 선택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힌 거죠.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이 구조가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것은 사실이에요. 새로 들어온 청소년들이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2주 동안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대한 1인 1일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원래 외출은 다 자유이기 때문에 주말 외박은 금토 기준으로 한달 내내 언제나 자유. 핸드폰도 평일 주중에는 같이 사는 친구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11시 취침할 때 제출하지만 주말은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담배는 원래 자유였고요. 술은 여기서 안 되지만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은 되고 단지 팔라가 돼서 들어오는 것은 조심하자는 정도. 무단 외박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세 번 했을 때는 같이 모여서 무단외박을 하게 된 상황이나 이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청소년이 들어오는 입구를 좁게 만들고 싶었어요. 입소한 청소년이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사는 방식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공간에서 경험하면서 터득해 가는 거잖아요. (한선우)

---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관의 정의에 따라서 차이가 큰 거 같아요. 저희 기관은 이 질문을 계속 해 왔고 저희는 일탈도, 비행도, 위기도, 거리도 아닌 길 위의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삶의 길 위에서 나도 길을 가고 있고 청소년도 가고 있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려면 규칙은 조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방법을 서로 같이 찾아보자고 하면 규칙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김현서)

김현서는 기관에서 규칙의 기능과 의미를 생각 할 때 청소년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들을 만나는 방식도, 이들을 만나는 사람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그녀는 인권의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있다.

시대와 청소년의 변화를 읽고 운영규칙을 바꾸는 일은 주거와 자립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 기관들의 공통점은 우연이 아니다. 주거를 고민할 때 우리는 혼자 살 수도 있고 누구와 함께 살 수도 있다. 물리적 공간에 따라 관계 설정은 달라지지만 관계의 정의는 물리적 공간의 특성과 의미를 규정한다. 시설이든 집이든 함께 살기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춰 갈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 중에는 규칙을 포함한 그야말로 기타 등등이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관계와 가치, 실천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

## 2) 물리적 공간과 관계의 거리

일시 쉼터와 청소년지원시설 실무자 세 사람은 모두 공동생활에서 개인의 독립공간

이 없을 때, 공간이라는 한계에 막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한다. 분리되지 않는 공간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독립 공간이 있다면 해소될 수도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기도 한다.

---

예전에 사회 분위기가 사는 곳이 좁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해도 '잘 곳이 있는 게 어디야' 하던 시절이 있었죠. 얇은 이불을 겨울에 덮고 자도 '우리 함께 살아보자 구나' 하던 시절에는 저희 공간이 좋은 공간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쉬운 공간이 됐어요. 현재 청소년 8명이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한방에 3명 정도 같이 쓰거든요. 자기만의 공간, 조용한 공간, 구분된 공간을 청소년에게 주기에는 좁아서 저희도 고민이 돼요. 자기공간이 없어서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유롭지 못하죠. 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니까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에도 늘 한계에 부딪치는 거예요. 난 자고 싶어. 근데 누가 방에 있네. 그럼 잘 수 없어요. 난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 오늘 난 음악을 좀 크게 듣고 싶는데 이어폰은 귀가 아파서 낄 수가 없어.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일상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한선우)

---

처음 입소했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고, 생활해야 하니까 제일 불편한 점이그거죠. 혼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전혀 보장받지 못하니까 안쓰럽고 미안하죠. 사람은 자기를 무장해제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살면 그런 건 일(1)도 없죠. (김현서)

---

침터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개별성이 존중받기 힘들어요. 방을 같이 쓰니까 한명은 떠들고 싶은데 한명은 방에서 자고 싶을 때 어려워지죠. 떠드는 애한테 제재를 하게 하죠. 현재 물리적 공간 구조에서 침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방을 같이 쓰면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독립공간이 필요해요. (이수연)

한선우는 같이 사는 사람끼리 부딪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힘들어 한다는 점을 얘기한다. 그녀는 탈가정의 과정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경험을 많이 한 청소년들에게 관계의 짐을 다시 지우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다. 감정을 터뜨리고 싶어도 공간이 필요하고,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도 공간의 거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시설 공간 구조에서 어려운 일이다.

---

저희 기관에서는 사람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문제가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요. 싸우거나 불평하고 투닥투닥 하는 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견디기 힘든 거죠. 이 공간에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재 때문에 되게 힘드네. 힘듦에 힘듦을 계속 보태는 그런 관계적인 면들이 있죠. 자의든 타의든 이곳에 청소년들은 자기 변화와 삶의 변화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자기 변화도 버겁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너무 짐이지 않을까.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이미 길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타인과 부딪히며 살았다는 건데 타인과 부딪히며 사는 것이 과연 익숙해졌을까? 이들이 위해서 익숙해졌을까? 삶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해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 한 칸에 해소하고 싶은 어떤 것들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청소년들에겐 같지 않을까.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마음껏 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비밀 일기 쓸 공간 하나 없는 이곳이 힘들겠다. (한선우)

이수연은 쉼터에서 청소년 간에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관계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청소년 사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실무자 사이도 마찬가지다. 쉼터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청소년의 모습이 실무자의 눈에 띄면 실무자는 지적하는 말을 하게 된다. 독립된 공간이 보장 되서 실무자의 눈에 청소년이 보이지 않으면 실무자는 덜 간섭하게 되고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다. 이수연은 공간이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지적한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마음이나 노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공간의 경계가 있어야 관계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탈가정 청소년을 만나면서 물리적 공간의 확보 없이 정서적 거리의 확보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독립 공간을 보장해 주면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청소년이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같이 사는 실무자들도 청소년과 거리가 필요해요.

실무자들이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 본인이 좋아야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는 거죠. 깨끗한 환경이 좋다는 걸 알면 치울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청소년들 만나보면 좀 더디긴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절실해지면 하더라고요. 실무자가 옆에서 잔소리해서

고쳐지는 건 나이고 사실 그 시간을 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버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버티는 시간이 제가 청소년이 다 보이는 공간에서 버티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도 안 봐야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서로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내가 어른인데 언제까지 청소년을 저렇게 봐줘야하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는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안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필요하겠구나. 서로 자기 영역이 있어야 보고 안 보고를 선택할 수 있고 청소년들도 숨을 쉴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실무자도 좀 살만하지 않을까? 내 방에서 문을 잠그고 피해 있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이런 공간이 집에 없어서 탈가정한 청소년도 여럿 봤어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다 필요하죠. (이수연)

### 3) 시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

이 사회는 그룹홈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없다’는 낙인을 찍는다. 그룹홈 거주 자체를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낙인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살고 있는 집이라고 소개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특수성의 규정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사회적 낙인 또한 동반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설의 특수성을 넘어 “일상적인 형태의 대안 주거 공간”이라고 청소년지원시설의 실무자는 말한다.

---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은 입소 자체가 ‘부모가 없다’라는 낙인이 있는 거죠. 공동생활 가정의 기본 취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간판도 없고, 일반 주택가에 있고 애들이 많은 집, 그런 개념인데 아이들 대부분 ‘그룹홈 이다’ 하면 ‘너 부모랑 안 사는구나’ 낙인이 되는 거죠. 물리적 공간으로는 낙인이 없지만 심리적으로 낙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건 조심을 많이 하죠. 홍보 할 때 얼굴 드러내지 않고 초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죠. 애들이 너무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걸 보면 속상하죠. 아님 애들도 있지만 항상 자신을 가리고 사는, 자기를 오픈 하지 않고 살면서 그룹홈에 사는 걸 말하지 않는 애들도 있죠. 그룹홈에 사는 게 편견을 가지고 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룹홈에 들어와서 좋은데 부모랑 못 살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애다’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본인한테도 있죠. 사회분위기를 무시하고 살기는 어려운 거니까. (조희진)

---

여기는 법적으로 비공개 시설인데 지금은 여기가 어떤 청소년이 오는 곳인지 다 알려져 있어요. 낙인이 찍혀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이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놔서 밖에서 연결된 많은 청소년들은 이곳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비공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쉐어하우스든 게스트하우스든 일상적인 형태의 대안 주거 공간을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는 근거를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성인데 이걸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연결이 되기도 해요. 여기 들어와서 살려면 늘 지고 가야 하는 낙인의 집?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 형태가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선우)

## 4) 청소년과 주거

탈가정 청소년들은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실무자들의 얘기처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살고 있는 곳을 말할 수 없는 때, 살고 싶은 곳이 아닐 때, 선택할 수 없을 때, 원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할 때 그곳이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아니든 ‘집 같은 집’이 아닐 수 있다. 청주넷은 탈가정 청소년이 ‘집 같은 집’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것은 집이 살만한 물리적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포함해서 같이 사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왜냐하면 집은 물리적 공간이자 관계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김현서의 말처럼 우리는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더 많은 시도와 상상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기꺼이 가고 싶은 다양한 주거공간이 이들의 선택지가 되어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가 실현되기를, 주거권이라는 보편적 권리에서 청소년이 예외적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시설은 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집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면 그룹홈에 사는 애들은 ‘이모야’, ‘우리 집에 일하시는 분이야’ 되게 다양하게 돌려대죠. (조희진)

---

청소년은 있을 곳이 없어서 갔더니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 명과 같이 공간을 써야 하는 거죠. 그곳이 집일 수 있을까요? 어떤 청소년은 적응하면서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선택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 나는 어른과 함께 살고 싶어 그럼 오케이. 나 혼자 싶다고 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안전망은 필요하겠지만 오케이.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청하고 같이 대처해 줄 안전망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다고 주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싶고 그 집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집이 아닐까요?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너 여기 들어가야 해’라고 말하고 같은 유형의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좋은 주거 공간이 아니고 지금보다 나은 곳이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면 고시원처럼 각자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하고요. 저 혼자서 안 되겠지만 어른이 고시원 총무처럼 있으면서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청소년과 함께 사는 공간에 어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줘야지 지금은 사실 보호라고 말하지만 간섭이죠.(이수연)

---

5년 전에 청소년 주거권을 얘기했으면 불편하게 생각했을 시설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시설에서도 청소년 입소 비율이 감소하고 시설이 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설도 왜 우리 기관에 청소년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 청소년이 우리기관을 힘들어할까에 대해 고민을 다 하고는 있거든요. 고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주거권 운동이 하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주거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면 시설도 가능한 만한 주거 형태로 변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어떻게 꿈꿀 수 있는지 우리의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제안을 주거권 운동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서)

청소년이 폭력 가정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거리에 오래 있을수록 삶의 안정을 찾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일상을 만들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계획과 실행을 하는 삶을 만드는 과정은 집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이 그 출발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힘든 집에서 탈출 해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함께 살든 혼자 살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현장에서 시설을 넘어 주거와 자립을 고민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발걸음을 소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미 시작된 이들의 시도가 아직 오지 않은 청소년 주거권의 실현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더 많은 질문의 가능성을 열기 때문이다.

### 3. 시설의 경계 안팎에서 주거와 자립의 길찾기

여기에서는 일시 쉼터를 경험하면서 시작된 고민이 쉼터하우스 라는 주거 공간의 시도로 이어진 경우, 청소년이 지낼 수 있는 쉼터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온 역사를 가진 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의 세 기관들과 연결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실무자의 얘기를 함께 정리했다.

#### 1) 일시 쉼터에서 쉼터하우스로

##### [1] “하고 싶은 걸 해 보라”

거리 청소년이 쉼터에 가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고 청소년이 원하지 않으면 공간이 있더라도 활용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온 일시 쉼터 실무자가 있다. 이 고민을 나눠 온 수녀원에서 “하고 싶은 걸 해 보라”며 4년 전인 2016년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주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집이 생겼다. 이것은 필요한 공간이 생겼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후원을 받아 공간을 마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고민의 과정과 문제의식 속에서 이 공간의 의미를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시 쉼터에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쌓아온 고민의 연장선에서 이 집이 출발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곳을 쉼터하우스로 부른다.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집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이 3개이고 비청소년 1명과 청소년 2명이 지낸다. 비청소년 중 한 명은 일시 쉼터에서 4일, 쉼터하우스에서 이틀 근무를 하고 다른 한명이 5일 동안 이곳에서 함께 지낸다.

---

이곳은 우리 집이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쉼터하우스 정도로 얘기해요. 쉼터가 아니라고. 전세 계약서 쓰듯이 저희는 계약서를 쓰고 들어와요. 본인이 원하는 입주기간을 쓰고 그 기간 동안 청소년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든 그걸 정해요. 규칙이라는 단어는 없고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자는 내용 정도 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살면서 배려하면 좋은 것들.” 우리가 같이 정하는 내용이 4가지인데, 귀가시간, 외박에 대한 기준, 청소와 식사예요. 하루에 한 끼는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같이 먹고 나머지는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해요. 집에서 살 때 밥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여기에 오면 첫 번째로 묻는 게 “통금시간 몇 시예요?”예요. 귀가시간이 몇 시면 좋겠냐고 먼저 청소년에게 물어봐요. 제가 문단속 하고 자야하고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안 들어오면 잠을 잘 수 없다고 얘길 하죠. 지금은 귀가 시간이 밤 12시예요. 만약 늦을 것 같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 하죠. 외박 횟수는 청소년이 먼저 얘기를 하고요. 대략 주 1-2회 정도로 얘기가 나와요. 규칙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지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청소년 스스로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보통 거주 기간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끝지만 청소년 상황에 따라 달라요. 3년까지 있었던 청소년도 있고 6개월을 산 청소년도 있어요. 연장은 가능해요. (이수연)

이 집에 사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은 사는 방식을 함께 조율한다. 이들은 사는 기간부터 생활 방식까지 묻고 얘기 하면서 서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인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 두고 정해진 것도 변경 가능성으로 열어 놓는다.

## **[2] 비청소년과 한동안 같이 살아야 하거나 살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있다.**

비청소년과 청소년이 꼭 같이 살아야 하는가? 삶의 불안정성이 “청소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 이 시간을 곁에서 함께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비청소년일 뿐이다. 자해나 각자가 처한 사건과 상황이 청소년을 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청소년은 한동안 비청소년과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또는 청소년이 비청소년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탈가정 청소년이 비청소년과 함께 살든 살지 않든 이 과정은 삶의 안정성을 만드는 과정이다.

---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문제예요. 여기 방이 3개니까 어른인 우리가 빠지면 청소년 3명이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부담이 덜 할 거 아니예요. 저희도 독방을 쓰긴 하지만 생활공간을 같이 쓴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같이 대처해 줄 어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해를 심하게 하거나 폭력 가해 경험이 있거나 성매매 알선을 한 청소년은 단기 쉼터에서 안 받아줘요. 이런 청소년들은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야 청소년도 안전하죠. 새로운 청소년이 이 집에 들어올 때 고민이 많거든요. 원래 살던 청소년이 안정이 되고 이 사람과 맞는 청소년을 찾아야 하니까 집에 대한 홍보를 못해요.

전에 같이 살던 청소년은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 그 친구는 집에서 안 나가요. 자기 다리를 제 다리 위에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봐요. 자기 몸을 저한테 꼭 붙이고 있어요. 제가 집에 없으면 집의 조용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역 주변을 돌아다녀요. 성폭력 피해가 있던 청소년이었는데 조용한 곳에 있으면 가슴에서 뭔가 치밀어 오른대요. 트라우마 센터도 가봤는데 되게 힘들어 했어요. 좀 안정적으로 데리고 있어보자 해서 한 3년 정도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자립해서 살아요.

그런 청소년도 있었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트라우마의 장소인 거죠. 방에 못 들어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 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 친구는 거실에서 계속 지내다가 나중에 1년을 저랑 같이 잤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자기 스스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방에서 혼자 잘 수 있게 됐죠. 곁에 사람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는 거죠. 청소년이 원하는 관계의 거리를 인정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거죠. (이수연)

이수연은 국가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로 함께 사는 청소년 수를 더 늘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이 많아지면 독립공간이 확보될 수 없고 관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녀는 실무자로서 느끼는 고충을 말하기도 했다. 함께 사는 문제가 녹록치 않다. 불안정한 삶을 살던 사람이 힘을 충전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곁이 필요하다. 우리가 청소년 주거권을 말하는 것은 주거 불안정으로 생기는 삶의 불안정의 기간이 짧아질수록 이들에게 필요한 충전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구나 삶을 살다가 충전이 필요한 때가 오지만 회복탄력성은 각자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

저희가 국가 지원을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청소년을 더 받고 싶지 않아서. 더 많아지면 개별 돌봄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저희 역량도 안 되고요. 최대 3명의 청소년과 같이 살아봤어요. 그때는 저랑 청소년 한 명이 같이 방을 썼어요. 이 친구는 혼자 자는 걸 못하는 청소년이었어요.

저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청소년을 지원 연계 하면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서 관계 형성도 안 되고 지각한다고 몇 번 혼나면 미안해서 못 가고 결국 돌아오기도 하죠.

제가 가정이 없고 수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수도회에서도 후임자가 없어요. 개인 생활 보장이 안 되니까요. ‘청소년에게 관심은 있다. 하지만 너처럼 살 자신은 없다’는 거죠. (이수연)

### [3] 같이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집

집도 돌봐야 한다. 가꾸지 않으면 집은 빨리 훼손되고 망가진다. 같이 사는 사람끼리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관계의 시간이 필요하다. 동네에서 반상회를 하듯이 집에서도 모여 얘기를 한다. 같이 살면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같이 결정하고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함께 집을 만들어간다. 함께 사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함께 있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집의 모양도 달라지지 않을까?

---

저희는 2주에 한 번 정도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같이 얘기하면서 생활에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밤 12시인데 귀가 시간을 늦춰볼까? 어떤 청소년은 귀가시간을 늦춰달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청소년이 많지는 않아요. 한 청소년이 하는 말이 “제가 시계를 잘 안 봐요” 그래요. 거리에서 지내던 습관 때문에 시계를 안 보고 생활을 하니깐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자기가 시계 보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귀가시간을 늦춰도 상황은 똑같을 거라고 청소년이 스스로 말하는 거죠. ‘아, 이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같이 사는데 필요한 약속을 했지만 이들이 그동안 불규칙한 생활은 해 왔기 때문에 일주일 씩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살 생각이 없는 거니? 뭐가 불편하니?”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가진 걱정도 있는 거죠.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만약에 걸리면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하지만 걱정은 돼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겁이 나요. 청소년이 연락도 안 되고 안 들어오면 제가 잠을 못 자고 예민해져요.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또 후회를 하는 거죠.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다보면 계속 걱정은 밀려오죠.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어른의 우려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민해 가야 할지 계속 고민이에요.

의논해야 할 것은 같이 하지만 청소년 끼리 꼭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공동생활이 아니니까. 청소년끼리 친해지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수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을지 말지, 관계를 만든다면 어떤 관계가 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수연은 후회와 사과, 우려와 기다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청소년과 비청소년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설명과 대화를 시도한다. 동의의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빨리 진행되지도 않는다. 동의할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할 시간도, 결심 할 마음도, 두려움을 내려놓을 용기도, 곁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동의의 과정이 질문과 논의가 오가는 과정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시행착오의 과정과 망설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시간 동안 실무자는 고민을 한다. 나는 청소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너무 관계의 거리를 혹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가 상호적이라면 이런 질문의 답은 정해질 수도 없고 미리 정해져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연의 말에서 “고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의 고민이 멈추는 순간 관계는 위험해 질 수 있다. 고민은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과정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돌아보면 같은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수녀원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걸 청소년에게 얘기해요. 일시 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한계점은 있죠. 그런 부분도 청소년에게 설명하고 공유해요. 지원 신청서도 청소년과 같이 작성해요. 계획도 같이 세우고 예산도 같이 짜요. 추천 부분만 제가 써요. 청소년이 동의를 하면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편이에요. 그동안 제가 청소년과 만나면서 설명은 안 하고 안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청소년 곁에 있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몫은 버텨주고 같이 고민해 주는 거? 청소년에게 얘기하면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납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해 나가야 나중에 그 친구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엄마, 아빠가 되어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한 신화는 깨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역이 보장돼야 하는 거죠. 제가 모두를 사랑할 수 없는데 청소년에게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건 청소년에게도 안 시켜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집은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이 형태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수연)

## [4] 집은 중요하지만 자립은 주거만으로 안 된다

청소년 자립을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주거는 중요하다. 집은 해 보고 싶은 것들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주거는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나 주거가 있다고 자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교육 참여 수당 지급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꾸러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

함께 사는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4일 동안 하루 4시간으로 해서 교육 참여 수당 지급을 시작했어요. 청소년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을 하나씩 풀어가고 하는 상황이에요. 셰어하우스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고 생활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수연)

## 2) 같이 살지 않지만 연결된 관계에서 지원하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청소년지원시설은 14세부터 19세까지 입소할 수 있다. 입소 상태로 19세가 지나면 21살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정원은 10명이지만 현재 청소년 8명이 같이 살고 있다. 한 방에 청소년 3명이 같이 지내고 있다. A 청소년지원시설은 주거공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까지 구성원들의 생각과 관계의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서 이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왜 주거를 고민하고 시도하게 되었을까?

### [1] 가족 되기?

청소년지원시설에 온 많은 청소년들이 충족되지 않는 관계의 욕구를 말한다. 아마도 이것은 이전의 가족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허전함 일 것이다. 안정감을 갖기까지 여러 가지 조건과 과정이 필요한데 이곳에 오는 많은 청소년들은 사람의 온기에 대한 갈증이 있다. 그래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여러 관계를 만들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 이러한 청소년의 욕구는 외면하기에 어려운 현실의 문제이다.

---

청소년은 지금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건 기본적인 욕구이고 바람인데 이게 여기에서는 어려운 거죠. 1:1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관계의 시간들을 구축해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청소년은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단편적인 관계들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3년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지원과 관심을 받지만 그 다음을 나가는 못하는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힘들게 했던 엄마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 청소년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동안 못했던 걸 하거든요. 그건 엄마의 능력도 아니고 가정환경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라는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한선우)

도달할 수 없었던 가족 되기는 청소년들의 욕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2018년에 조직 개편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출발점으로 삼기에 충분하고도 필요한 과정이 ‘가족 되기’ 였다.

---

2018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모두가 처음 시작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청소년들이 전에는 해 보지 않은 조금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험을 해 보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가족 여행이나 가족사진 찍기나 그런 거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끈끈하게 결합되는 느낌을 받았던 거 같아요. (김현서)

---

2018년에 가족이란 키워드가 청소년들과 되게 매칭이 잘 되는 순간이 있었죠. 프로그램 연결도 잘 되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소위 말하는 공동체성도 잘 구현되는 시즌이 있었죠, (한선우)

‘가족 되기’는 청소년들의 질문 앞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는다. “그래도 우린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의 가족 되기 경험에서 돌아온 얘기는 가족이 아니라는 불편하지만 당연한 인정이다. 이 질문은 같이 이 공간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자 도대체 가족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비판이 담겨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가족이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이 아니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관계. 가족 되기의 경험은 실패한 것인가?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가족의 의미

는 무엇인가? 던져진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다.

---

어느 시기가 오니까 청소년들이 오히려 먼저 “그래도 우린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움찔했어요. 가족처럼 대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이 진심이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절묘하게, 적나라하게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엄마는 아니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너에게 내가 엄마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만큼 따뜻함이 느껴졌다면 ‘엄마’는 버리고 따뜻함을 잘 가지고 있자.” 이게 저희 나름의 다음 방식이었어요.(한선우)

---

저희가 엄마고,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청소년이 괴리감을 더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지도 않고요.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고 엄마처럼 대해줘도 저희는 가족도 엄마도 아니거든요. 그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어떤 청소년과 합이 맞아서 엄마라는 역할의 서사가 가능한 거지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 거죠.(김현서)

한선우는 청소년들의 질문을 또 다른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청소년의 질문을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니 청소년들은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현서는 청소년들의 질문을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이해한다. 청소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의 거리를 설정하면서 시간이 되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과 함께 현실을 자각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선긋기는 좋은 관계를, 의미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놓고 싶지 않아 떠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의 도전적인 질문을 부정적으로, 서운함으로 받기보다 오히려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과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가족은 아니지 않느냐고 청소년들이 얘기한 것은 다른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 해요. 2018년에 가족 키워드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채워진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의 결핍감을 “내가 엄마가 없어서야”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부분이 정서적으로 채워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겼겠죠? 저희 기관에서도 청소년들이 관계에서 채워진 부분이 있는 거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죠. 소통과 교류가 계속 잘 이어졌던 거죠.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싶어진 거죠.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기관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힘이 생겼어, 이제 해 나갈 거야’라고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실망감들이 있었죠. 우리 기관은 동일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대했지만 청소년들은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자신들이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지낼수록 이후 여기를 떠나서 사는 것에 대한 공포심은 더 커질 수 있죠. (한선우)

---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죠. 청소년들이 끈끈한 관계로 같이 살고 있지만 끝을 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차면 여기를 떠나서 자립을 해야 하니까. 좋으면 좋을수록 끝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이 아니잖아” 나를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계획을, 취해야 할 태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김현서)

## [2] 함께 살기

청소년지원시설은 구성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가족 되기’ 이후 고민하고 실천 할 주제로 ‘함께 살기’를 선택한다. 이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관은 지금 만나고 있는 청소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시설의 안과 밖을 넘어들며 관계의 확장을 상상하고 질문한다.

---

2019년 저희 주제가 함께 살기였어요. 가족에 대한 결핍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있고 옆 사람이 있고 이 사회 속에서 누구와도 살 수 있지. 이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마음이 함께? 몸이 함께? 우리가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해도 함께 사는 건가?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살아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기고 가족은 해체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았을까? 우리 대안은 가정의 역할이다. 여기가 울타리다. 여기 안에서 잘 지내봐라. 이런 발언들 구시대적이다. 우리도 사회의 일부이고 여기도 사회와 함께 섞여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선우)

함께 살기는 청소년만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함께’이니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다. 청소년지원시설 실무자들은 ‘변화’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중요하게 말한다. 청소년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청소년도 변해야 한다. 그럴 때 존재를 보는 시선도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어떤 관점과 이해로 시작점을 만들 것인지가 과정을 좌우하고 다른 결론을 만든다. 이 과정은 요청된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시간이자 변화의 내용과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다.

---

함께 살기 위해 실무자도 변해야 해요. 자신이 해 왔던 방식대로 하고 기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변화에 귀를 닫고 있으면 변하지 않죠. 내가 변해야 규칙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나 자신도 볼 수 있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거 같아요. 예측이 안 되도 시도를 해 보는 걸 저는 여기서 배웠어요. 청소년들과 함께 시도해 보면서 저도 달라진 거 같아요.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하면서 시야가 확장된 부분도 있고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김현서)

---

청소년들의 선택으로 이 공간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종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실무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청소년이 선택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정이죠. 그 인정만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죠. 사회가 청소년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 보다 보호와 교육, 결정된 방향으로 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거죠. 저희가 실무자 교육을 할 때 자기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자신이 청소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런 과정이 변화의 시작 지점이죠. 내가 이 청소년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관점이 생겨야 하는 거죠. 실무자가 바라는 모습이 청소년에게 안 보일 때 실무자는 괴로울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이기에 이 상황이 불편한가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시작점이 바뀌어야 해요. 그럴 때 규칙 몇 개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청소년과 만나는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사람은 어차피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고정된 채 계속 사는 걸 선호하는 사람 인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청소년과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예전에 저는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거 없이 1분 1초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면 나도 변하고 시설도, 청소년도 변하는 것이 아닐까? (한선우)

### [3] 자립의 시간, 함께 살지 않지만 연결된 관계로 살기

A 청소년지원시설은 함께 살기 주제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를 질문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살기의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다. 이 고민은 청소년 자립이라는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 됐다. 왜냐하면 함께 살기라는 과제를 던질 때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살기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고 경험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해가는 과정이다. 시설 안에서만 함께 살기를 고민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더 넓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이것을 자립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전환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말한다.

---

고민은 계속 해 왔는데 한번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청소년을 보면서 변화의 시점을 계속 체크했고 그것에 자극도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느꼈다고 해서 바로 판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과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근거를 찾기 위한 공부가 필요했어요.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료 찾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과 언제 얘기를 할 지 시점을 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들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고 우리의 고민과 맞았던 거죠.

가족 개념을 충분히 느끼면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배신감도 겪었어요. 함께 살기를 고민하면서 이곳에서 오래 지낸 청소년들은 배타적으로 여기가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립이 두려워서 여길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뒤로 가는 청소년을 보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이 멈춰 있는 것인가? 몇 명 소수의 문제인가? 이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청소년드른 가족 같은 끈끈함을 원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뭔가 전환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청소년들과 얘기를 했어요.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했고 서로 결정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설 문을 잠시 닫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얘길 했어요.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으로 이해는 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혼란이 엄청 왔던 때도 있었죠.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과정에 함께 하고 싶다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재정비를 하고 다시 시설 문을 연 게 8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잘 살아보다가 잘 준비해서 바이 바이 이라는 게 아니라 시설 밖을 나가서 다르게 살아오는 시간을 가져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실제 자립해서 살아보기를 시도한 거죠. 예전에도 필요에 의해서

몇몇 청소년이 시도를 했는데 그걸 구체화 시킨 거죠. 청소년 본인이 자립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 자신이 거주할 곳을 정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과정에서 얘기를 계속 하면서 고민을 실행해 가는 거죠. (한선우)

이러한 전환은 실무자와 청소년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삶의 과제를 다르게 설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시설에서 자립을 얘기하지만 자립은 고정된 방식으로 얘기 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의 자립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지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 A 청소년지원시설은 이 과정 자체를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함께 살지 않지만 연결된 관계로 자립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다.

---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경우 입소해서 시설에서 살거나 시설을 나갔다면 직업훈련 등으로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게 있죠. 시설에서 선생님들이랑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만 이 공간에서 같이 살고 싶지는 않고 밖에서 자기만의 생활방식대로 살면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의 시도는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넓힌 거죠. (김현서)

---

현재 청소년 3명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은 대부분 1년 정도 여기에서 지내보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무시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이것저것 해 보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예요. 현재 진행 중인데 어떤 청소년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이제 퇴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청소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남들은 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청소년 본인은 자기한테 맞다면서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과 얘기를 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 해 주고 원하면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열어 놨어요.

청소년 중에 더 일찍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혼자 해 보려고 노력하다 안 돼서 늦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연락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으면 되니까. 대신 청소년에게 그런 말은 하죠. 늦게 연락한 게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거야. 연락 안 하고 혼자 몸부림치다가 괴로워서 연락하는 청소년이 제일 많죠. 신기한 건 옛날 생활 즉 대안가정으로서의 역할만을 필요로 하고 요구했던 청소년들이 큰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일줄 알았

는데 그게 아닌 걸 배우게 된 거죠. 청소년들의 관계의 폭이 확장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공간을 함께 쓰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청소년들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런 시도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새롭게 배워가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한선우)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 과정이 더 구체화되고 서로 정말로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함께 살기의 방식이 바뀌니 청소년과 실무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졌다.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때 까지 실무자는 주로 기다린다.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실무자는 청소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어떤 상황인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다. 실무자들은 청소년 보다 앞서지 않는다. 한선우는 이런 상황을 “대리 운전 하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

실무자들이 하는 역할은 대리 운전 같은 느낌? 콜이 올 때를 기다리죠. (웃음) 도움 요청은 안 왔는데 제가 먼저 청소년에게 필요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슬쩍 돌려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같은 공간에 없으니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청소년이 족쇄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청소년이 저희를 정말 필요로 할 때 달려간다는 걸 청소년도 느끼게 하죠. 지금 2주에 한번 정도 청소년과 만나서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자립 준비를 해요 완전 망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지를 같이 얘기해서 다른 방법을 권유하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시점인데 안 하고 있으면 왜 말하지 않을까, 어떤 마음이기에 표현하지 않을까, 아직 자신이 더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쪽 팔려서? 녀이 나간 걸까?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청소년에게 조심스럽게 얘길 해요. “네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널 지켜본 바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묻는 방식이 되죠. (한선우)

---

최근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운전을 많이 해 보고 사고 상황도 본인이 경험해 보고 그걸 해결해 가면서 드라이버가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받긴 하지만 자기 경험이 없으면 운전을 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자립 연습을 하러 밖에 나갔잖아요? 밖에서 애쓰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길을 돌아갈 때도 있고 힘들게 문제를 풀 때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 과정을 경험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실무자가 앞서서 해결을 제시하기보다 청소년이 직접 겪었을 때 삶의 근육이 형성되는 게 아닐까? 물론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청소년이 삶의 근육을 기를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 시도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도움도 요청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곁에서 얘기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김현서)

A 청소년지원시설은 행정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도전이 청소년지원시설 구성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도전임을 설득하기 위해 근거도 만들고 있다. 이들의 자율성과 욕심은 이 도전이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듯하다. 그만큼 이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과 함께 방향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 온 시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자립준비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잘 구비하려고 해요. 청소년이 입소상태에서 밖에서 지내지만 생필품 지원을 하고 상담하고 시설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시설 안에 가능한 것 중에 '이용자'가 있어요. 이용자와 입소자가 있는 건데 이용자 T.O가 있다는 건 입소자도 중간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운영해도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분과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중이에요. 행정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언젠가는 저희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선우)

#### [4] 청소년 쉼어 하우스 & 게스트하우스

A 청소년지원시설의 고민은 주거 문제로 이어진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이 공간이 어떤 주거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자립 과정을 준비하면서 시설을 나간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자연스럽게 '주거'라는 키워드로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쉼어하우스를 고민하고 있다. 청주넷이 A 청소년지원시설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현재 우리의 고민이 만나기 때문이다.

---

저희가 청소년 쉼어하우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같이 나눠서 쓰는 쉼어(share) 개념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쉼어하우스 얘기할 때 여기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공유의 개념으로 바꿔보자. 여기는 우리 모두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함께 사는 존재로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당장은 전환하기 어려워서 지원시설을 유지하면서 전 단계로 주거가 필요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 게스트하우스예요. 한국의 사회복지 자체가 갑과 을의 관계이고 수혜자로만 살아가는 관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쉼어하우스가 갑과 을이 아니라 함께의 개념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 그동안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고정된 우리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고민이 게스트 하우스로 연결이 된 거죠. 게스트 하우스는 청소년이 돈을 내니까 저희가 을이죠. (웃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원하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저희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게스트하우스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해요. 안전하게 쉴 공간, 씻고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소액을 지불하고 하루 쉬었다 갈 수 있어요. 유료서비스 중에는 필요한 걸 대여하거나 속옷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가격은 아직 시범 운영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2인실을 하룻밤에 6천원, 1인실은 8천원을 받아요. 조식 포함해서요. (한선우)

---

저는 이용시설에서 꽤 오래 있다가 생활시설로 왔어요. 이용시설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주거가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주거가 안정된 사람은 출석률도 안정적이고 뭔가에 도전하는데 있어서 주거유무에 따라 차이가 큰 걸 봤어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생활시설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규칙이 있고 간섭이 있고 실무자들이 그려놓은 시나리오대로 청소년이 따라야 하고 이런 얘기를 꼭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꼭 고민을 해 온 거죠. 갑과 을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청소년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면 받은 만큼 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쉼어하우스 형태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정리된 건 아니고 주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은 방향성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인데 계속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김현서)

### 3)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필요한 :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자립

B 아동양육시설은 정원이 70명 정도 되는 시설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7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2019년에 아동 37명이 살고 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살고 있고 한 방에 두 명씩 지내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즉 만 18 세에 퇴소를 한다. 퇴소와 동시에 LH 공사에서 전세금을 빌려준다. 인터뷰에서 김민정은

퇴소 이후 자립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얘기한다. 첫 번째는 퇴소 청소년이 집을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단지 집 관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두 번째는 돈 관리 문제이다.

---

LH 공사 기준이 있어요. 빌려주는 전세금이 6천인가 7천이었던 거 같아요. 만 20세부터 이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이 끝나면 LH 공사에 돈을 돌려주는 거죠. 3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총 6년이죠. LH 공사에서 어려워하는 점이 이들이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친구들을 불러서 옵션으로 달린 기기를 부스고 자취를 감춰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들어와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럴 때 이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야 하나? 교육을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항상 하죠. 지금 애들은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 18세에 퇴소를 해서 갑자기 혼자살 수 있는 집이 생기고 선물처럼 갑자기 큰돈이 통장에 있는 거잖아요. 자립정착금이 있고 CDA(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원하면 깎 수 있어요. 이번에 퇴소하는 애들 봤을 때 CDA만 천 만원이 조금 넘어요. 자기한테 갑자기 큰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면서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쓰고 다니는 일이 전에는 있었다고 들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퇴소를 하면 수급자를 유지할 수 조건이 되거든요. 시설아동으로 수급자가 되면 월 50만원 정도 나와요. 전기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애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애들 교육할 때 제가 들은 내용을 공유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통장을 확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김민정)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김민정의 고민은 A 청소년지원시설 실무자들의 고민과 닮아 있다. 차이가 있다면 아동양육시설은 자립 과정을 퇴소 이후로 배치했다면 A 청소년지원시설은 퇴소 전에 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시설 밖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시설을 퇴소 한다고 저절로 자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퇴소 후에 청소년에게 전세금이 지원되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를 하게 되면 지금의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주거를 고민하기 까지 거쳐 온 고민과 논의들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주거가 제공된다고 자립이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애들이 퇴소하면 사회에 뚝 떨어진 느낌인거죠.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아 봐야 하고 전기세도 처음 내 보고. 생활 시설은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까 규칙도 있고 여기서 밥도 해주고 돈을 자기가 쓸 일이

없으니까 전기세 낼 일도 없어요. 시설 안에서는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지만 실감한 게 없고, 실제로 해 본 게 아니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설을 나가도 다시 처음이 나 마찬가지로. 나이만 많은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퇴소 후에 생활이 힘들어지면 어떤 사람은 시설에 요청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퇴소 후에는 저희가 옆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전화로 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사회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자기가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경험을 해 봐야 하는데 어떤 애들은 실패해도 일어나지만 아닌 애들도 있는 거죠. 간섭이 아니라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5년간 관리하라고 하지만 시스템은 안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본적이 없네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전에 퇴소를 하고 싶다고 한 애들도 없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인터뷰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퇴소하기 전에 고3, 1년 동안 나가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서 시설 실무자 회의 때 의견이 있었어요. 고3 때 시설 밖에 나가서 살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김민정)

#### 4) 청소년의 필요를 살피다 보니 여기까지 : 들꽃청소년세상

들꽃청소년세상(이하 들꽃)은 청소년 주거권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청소년 현장 중 하나이다. 현재 청주넷에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와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들꽃청소년세상은 지금으로 보면 그룹홈으로 시작을 했다. 들꽃은 청소년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 다양한 청소년 지원 시설을 포함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저희가 지금의 그룹홈 형태로 아동을 돌보기 시작한 94년 부터예요. 법제화되기 훨씬 전이죠. 처음에 애들 8명이 들어왔어요. 11살에서 14살 정도까지 였는데 가출을 해서 놀이터에 모여 있던 애들이었죠. 교회에 들어와서 애들이 잠을 자고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아는 분이 후원을 해 주셔서 안산에서 자리를 잡았죠. 애들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98년도에 다섯 가정으로 나눠졌어요. 그 과정에서 애들이 많은 것 보다 적은 게 안정적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그룹홈 형태의 시초가 된 거죠.

가정이 무너진 애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가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대안학교하고 그룹홈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2008년인가 2009년에 LH 공사에서 한 동을 위탁 받았어요. 청년주택이죠. 원룸인데 16명이 살 수 있어요. 18세 이상 -26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18세 전에 시설에서 중도 퇴소한 청소년도 살았고 18세에 퇴소한 청소년도 있고, 집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살았죠.

조희진에 의하면 주거권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문제이다. 혼자 살 수도 함께 살 수도 있지만 그에 적합한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산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에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

---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주거를 같이 할 권리도 있고, 독립해서 할 권리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런 주거 형태도 필요하고 '나는 많이 같이 살아서 이제 혼자 살고 싶다'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주거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권 운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희진)

## V. 결론 및 제언

### 1.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담고 있다. 하나는 1년 동안 청주넷이 청소년 주거 지원 정책을 검토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을 정리했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 현장 중에 시설 안팎에서 또는 시설을 넘어 주거와 자립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시도를 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얘기를 정리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 청소년 주거권은 낯선 단어이다.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청소년 시설이 집을 나온 청소년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심각성과 삶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다른 청소년 시설도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소개한 청소년 시설은 밀려오는 고민에 머물지 않고 기존 시설의 운영방식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질문을 던진 점이다. 질문의 행위는 다른 가능성을 여는 문이기도 하지만 혼란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의문의 대상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믿고 있는 나의 기준과 역할에 대한 나의 확신, 청소년을 만나는 나의 방식, 시설에서 전제하는 청소년에 대한 고정 관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다. 믿고 싶은 자기 자신과 믿고 있는 세상을 의심할 때 새로운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질문의 행위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과 고정된 생각에 대해 거리를 뒤편야 가능한 일이다.

질문을 던지는 힘은 변화를 읽고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변화된 환경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삶과 욕구의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반응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와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요구된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 이 글에 소개한 청소년 현장의 이야기는 변화에 반응한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다. 이들은 시설 안팎에서 변화를 시도했고 시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시설과 주거, 자립의 주제를 넘나들며 변화를 고민했다.

가야 할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할 때 혼자서 질문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청주넷에 모인 사람들이 청소년 주거권을 함께 고민하는 동료이듯 우리가 소개한 청소년 시설에도 동료들이 있다. 함께 길을 찾기 위해 나누었던 대화가 있다. 그 자리에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있다. 비청소년이 먼저 갈 길을 정하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질문이 오갔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함께 힘을 냈다. 질문하고 답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길을 갈 때는 서로에게 길잡이가 필요하다. “경청은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며 열심히 들어주는 게 아니다. 서로의 차이에 집을 짓기 위한 경청은 응답이어야 한다.”<sup>83)</sup> 응답은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은 행동을 동반한다.

인권의 역사에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그랬고,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그랬고, 스쿨미투 운동이 그랬다.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그랬고 홈리스 운동이 그랬다. 의심을 받았던 이들의 질문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다.

## 2. 청소년 주거권 운동의 시작을 위해

이제 청주넷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청소년 주거권 왜 안 됩니까?”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들에게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면 청소년이 살고 싶은 집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

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앞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길이 뚜렷하게 보여서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 주거권 운동의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질문을 던질 청소년과 청소년 현장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

83) 엄기호, 2018,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105-106쪽.

[ 토론문 ]

## 청소년의 존엄성 그리고 선택

곰곰

저는 청소년의 존엄성과 선택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존엄성이란 보통 한 개인이 가치 있고 존중받으며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와 없는가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존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 먼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청소년 = 어린아이, 보호, 선도, 돌봄, 학생, 공부”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청소년을 향하는 본인의 선택이 없는 보호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의무교육, 보호자에게 돌봄 받는 것 모두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정으로부터의 탈출 후 자립해서 살아가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벗어나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소수이며,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가 당사자들을 꾸짖고 비교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청소년, 불량청소년, 비행청소년, 날라리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당사자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였을 때부터 가정, 길거리, 보호시설,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 자취, 동거 등 비교적 다양한 주거의 형태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주거 안에서 저는 제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일상에 무관심했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길 바라셨고, 어떠한 괴로움도 없어야 하며, 어른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항상 밝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가정에서 탈출해서 길거리로 향했습니다.

거리로 탈출한 저는 그곳이 곧 저의 집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내 선택대로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처음엔 그저 좋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어가니 잠을 자고 밥을 먹기 위해서 그저 웃어야 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로 바뀌어만 갔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시간은 늘어만 갔습니다. 새벽녘이 지나 해가 뜨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보호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낯선 곳이라는 느낌,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야 한다는 것, 불편한 사람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해야 한다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귀가 시간 등 이미 정해져 있는 수많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일은 선택이 없는 어른들의 폭력적인 보호였습니다.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가기 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과 인턴십 활동,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취직하고 난 뒤, 시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증금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고, 결국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는 무척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존중받고 싶은, 내 삶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만 가득 있던 저에게 어떤 것이 존중이며 어떤 것이 선택인지, 그 선택의 책임은 어떻게 짊어지는지 알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았지만, 그 불편한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은 보호자라고 느끼는 사람과 대화하기 싫었던 그 옛날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일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내 생각을 물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는 제가 겪었던 그 이전의 어느 곳보다 “집”이라는 것에 가까웠고, 그 누구보다 가족이라는 말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사는 삶보다 상호 간의 약속 안에서 사는 삶이 더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한 경험이 없고, 단 한 번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을 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저는 ‘나’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활동가는 나를 대변하지 않았고, 내 이야기를 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손을 잡아 함께 했습니다.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와 그 이전에 살아온 다른 집들의 차이점은 “사람”입니다.

사람 혹은 청소년은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누구를 만났고 만나고 있는가에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뀝니다. 암울하고 자책했던 과거의 나를 보듬고 이해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했던 현재의 나를 격려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나”가 합쳐져 더 성숙한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저는 막상 이상한나라에서 출국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자취와 동거를 시작했을 때 막연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했던 그 사람들의 곁을 떠나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일 정도로 적응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출국한 앨리스, 제가 출국한 뒤 출국한 앨리스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청년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진 않아도 밀접하게 교류하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네트워크 가족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주거를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 가족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나누고 삶을 응원하면 그것 또한 주거이자 집다운 집이고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사용하듯이 삶을 나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집이라는 건물과 공간의 개념보다 어떤 사람이 곁에서 함께 삶을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거리로 탈출한 그 선택과 살기 위해 보호시설로 들어간 그 선택,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를 만났던 그 선택, 이상한나라에서 출국한 뒤 네트워크 가족을 만들게 된 그 선택들이 모두 모여서 저라는 존재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어떠한 주거의 형태들이나 다른 청소년 혹은 인간의 선택이 “옳다, 옳지 않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떠한 것도 당사자가 선택하고 본인만의 방식대로 책임을 짊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인간이 존엄성 있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당사자의 선택이 존재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존엄성 있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토론문 ]

## "자유와 보호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나요?" - 엑시트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살만한 '집' 이야기

윤경(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센터장)

\* 이 글의 사례들은 재구성 된 것입니다.

처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이하 엑시트)에서 활동하며 한동안 계속 화가 난 채로 있었던 것 같다.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거리청소년 복지 정책과 체계,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열악하고 위험한 현실은 '어떻게 이 지경일 수 있는가' 라는 소리만 반복하게 했다. 그나마 있는 정책의 담당부처는 일관성 없이 나뉘어져 있었고, 비슷한 조건의 청소년이지만 부처에 따라 지원의 내용은 달랐다. 공적지원보다 민간위탁과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공개되어 있는 내용은 너무 빈약했다.

엑시트는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그 위기를 안전하게 넘어서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에 작든 크든 무엇이랄도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청소년들에게 함께 시도해보자고 제안할 방향을 찾기 어려워 자주 막막해진다.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이토록 막막한데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얼마나 막막할까. 특히 주거 문제는 가장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다. 잠잘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조건 없이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감히 이해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막막함을 버티며 현장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했고, 무척 반가웠다. 같은 막막함을 겪고 있는 서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 막막함을 같이 말할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 1년간 많은 이들이 애써 만든 고민의 결실이 다양한 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엑시트도 기꺼이 힘을 보태고 싶다.

**집을 탈출한다.**

엑시트가 만나는 청소년의 대다수는 부모로부터 물리적 폭력 또는 학대 수준의 방임을 경

힘했고, 이 때문에 집을 탈출한 이들이다. “철이 없어서, 놀고 싶어서, 고생을 안 해봐서” 라는 말을 하기엔 이들이 처했던 폭력상황은 너무 참담하다.

“작년 7월 23일 집에서 나왔어요. 가정폭력 때문에. 아빠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때렸어요. 저희 아빠 되게 야박해요. 그런 걸 알아요. 어디를 때리면 안 걸리는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았어요. 4살 때부터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졌어요. 아빠랑 친한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먹고 잤어요. 부모님은 몇 달에 한 번씩 연락 왔어요.(생략) 보육원도 아니고, 입양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좋은 분들이었냐고요? 폭력은 없었어요. 대신 원장 남편이 목사님인데 성추행을 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생활했어요.” - 인터넷언론사 비마이너, 탈가정 청소년들의 거리 생존 분투기

“아빠로부터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됐어요. 학교에서 왕따 피해를 당하는 저를 아빠는 되게 혐오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네가 왕따여서 그렇다”라고 저를 비난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았어요. 가정통신문에 부모님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닥치고 올라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왜 안 보여줬냐”라고 했어요. 1층에 아빠가 있으면 거의 못 내려갔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때리기도 했어요. (생략) 참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 전에도 아빠가 때리거나 괴롭힐 때 신고 하고 싶었는데 보복이 무서웠어요. 경찰이랑 상담했을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가족이 깨지는 걸 원하냐”, “신고해도 네가 맞을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아빠는 크게 처벌받지 않을 거다”였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집을 나오기 전에 제일 걱정됐던 건 ‘집을 나가면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였어요. 그런데 중3 여름에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때리려고 해서 결국 집을 나오게 됐어요.” - 2019년 엑시트 운영보고서, 청소년 강사단 글 중

부모들은 청소년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 비밀번호와 핸드폰번호를 바꾸기도 한다. 집에 들어가려 실랑이를 벌이다 문 사이로 밀어 넣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부모들은 청소년을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린다. 이러한 부모가 있는 ‘집’이어도 거리에 지친 청소년들은 어느 순간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자녀를 기꺼이 반기는 부모는 많지 않고,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거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된다. 청소년이 집을 탈출해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 거리의 위협

살기 위해 집을 탈출하고 거리로 나오지만 청소년들은 또 다른 폭력상황에 노출된다. 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많이 질문한다. “그럼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사나요?” 바로 이것이 문제다.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은 차치해도 월세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청소년이 구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마침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도,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보호자로부터 도망치거나 쫓겨난 이들에겐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구하는 일자리는 보호자 동의서가 없어도 되지만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18세가 넘어도 사정이 그리 나아지진 않는다. 일찍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밀려나 초졸이나 중졸의 학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녹록치 않은 거리생활에서 살아남은 지혜와 역사가 이들 몸에 각인되어 있지만 이를 이력서 어디에도 적을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험은 쓸모없는 경험으로 쉽게 여겨진다. 물류 상하차, 배달대행, 홀서빙 알바 등 손에 꼽히는 선택지만이 이들에게 열린 일자리다. 여느 현자들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걸 배워보자고, 자격증을 따보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 앞에 많은 이들이 머뭇거린다. 낯선 세계로의 진입은 누구에게나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보폭에 맞춰 조금씩 도전하고, 멈추고, 다시 도전하는 무수한 반복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안정적 돌봄과 체계적 교육환경을 살면서 만나지 못했다는 건 건너뛰어야 할, 억지로 보폭을 넓혀야 할 순간을 무수히 만난다는 걸 뜻한다. 사칙연산이 어려워도 점장에게 묻질 못한다. 19살이 되도록 덧셈을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생경한 한자어가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신청 접수 자체를 포기하고 만다. 무시와 모멸의 시선을 견디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다. 무기력은 욕망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욕망이 반복적으로 좌절된 결과다.

어찌어찌 집을 구할 수 있어도 그 집은 ‘집’이 되기 어려웠다. 몇 백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은 무보증 혹은 많아야 보증금 50만원에 최소 월세 40여만 원은 감당해야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한 집은 화장실을 포함해 3평은 될까 싶은 곳들이다. 옆방과 연결된 벽은 대부분 가벽이어서 방음도 잘 되지 않는다. 옥탑방이나 반지하방을 구하기도 하는데 단열이 되지 않거나 해충이 들끓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다. 그래도 혼자 월세를 부담하기 어렵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무서워서, 2~3명이 같이 집을 구하고 그 좁은 집에서 같이 산다. 하지만 이 집에서도 오래 살기는 어렵다. 월세 부담이 어려워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언젠가 청소년들이 몇 달치 월세가 밀려 독촉을 당하다 집주인을 같이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집주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말했다. “한 달에 18만원 월세 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학교만 가도 낼 수 있지 않아요?<sup>84)</sup>” 그렇지가 않다. 일

상을 꾸리는 경험, 조건 없는 안정적인 돌봄을 받은 경험들이 많지 않았을 이들에게, 혼자 제 시간에 일어나 계획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개인에게만 더욱 노력하길 요구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

집도, 쉼터도, 누구와의 동거도 가능하지 않아 거리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기도 한다. PC방에서 돈을 내지 않고 몰래 쪽잠을 자다 쫓겨나기도 한다. 24시간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은 쟁반을 앞에 두고 밤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생활은 당연히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이 때문에 당장 잠잘 곳도 돈도 없는 이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

거리에서 알게 된 이들이 선의를 베푼다. 어느 정도 친해진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따라간다. 그곳에서 얼마간은 또래들과 제약 없는 생활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이제 막 만19세가 넘는 그들 앞으로 여러 대의 가개통 핸드폰<sup>85)</sup>과 작업 대출<sup>86)</sup>이 쌓인다. 청소년 수중에는 만원 한 장 남지 않지만 순식간에 생긴 1~2천만 원의 빚은 긴 시간 청소년들에게 마음과 생활의 큰 고비가 된다.

성폭력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당장 잘 곳이 필요했고 아는 이들이 월세 내며 살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었지만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났다.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기억을 잃어 성폭력을 당한 것 같은 상황만 추측되기도 한다. 간단한 알바라고 해서 갔는데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성폭력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성폭력 사건은 발생하자마자 대응이 필요하지만 거리에 있는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한명 건너 아는 사이라 서로의 관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 뒤에 본인들에게 가해질 비난이 무섭기도 하고, 긴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해야 할 진술과정이 두렵기도 하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

84)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인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서울시 사업으로 인턴활동비와 지정후원금을 통해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인턴활동비와 교육수당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길을 보다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길 기대하며 진행하고 있다. 수업 역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해 마련되었고 한 교시에 여러 수업을 동시에 열고 각자의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퍼즐식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안전한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있다.

85) 연체 등의 문제가 없다면 현재 1인이 최대 6대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다. '가개통 사기'라고 불리는 사기수법은 피해자에게 여러대의 핸드폰을 개통하고 핸드폰 기계를 재판매해서 몇백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접근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한 뒤에는 기계만 가져가서 되팔고 피해자에게 재판매 금액을 주지 않거나, 유심까지 가져가서 소액결제를 하고 갚지 않아 더 많은 빚이 생길 수 있는 방식이다. 피해자에게는 핸드폰 기계값과 소액결제금 등이 부채로 남는다.

86)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대출금의 20~30%를 수고비로 달라며 접근한다. 피해자를 거짓으로 취업시키는 방법 등으로 고용이력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든 뒤, 실제 대출이 되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할 때 여러 이유를 들어 대출금을 모두 가져간다.

민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매매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쉽게 돈 벌려고 성매매 하는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 살기가 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돈 걱정도 없고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줄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일거예요.” - 2019년 엑시트 운영보고서, 청소년 강사단 글 중*

인생 살기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이를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 중 성매매 경험을 즐겁다고 말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성매매 경험은 이들에게 ‘폭력’으로 기억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성매매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무수한 성폭력 상황들을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고, 여성으로서 존중받는 경험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폭력의 일상화는 고통을 감지하고 저항하는 감각을 둔화시킨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잔혹한 일상인가.

## 시설은 누구를 위한 설계인가

엑시트 활동 초기 활동가들이 당장 오늘 갈 곳이 없는 이에게 “여기 쉼터 가보자, 저기 쉼터 가보자.”라며 설득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제안해도 가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았고, 왜인지 궁금해졌다. 쉼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그때 청소년 한명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생겼다. 이 쉼터는 왜 가기 싫냐는 질문에 “담배도 못 피고, 핸드폰을 자기 전에 걸어가요. 외출도 못해요.”라는 답을 했다. 나는 너무 당당하게 “담배야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지만, 다른 것들은 요즘 세상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틀렸다. 같이 확인해보자 하고 해당 쉼터에 전화해 물어보니 사실이었다. 일시 쉼터라서 외출은 퇴소였고 퇴소 이후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자리가 없으면 입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핸드폰 역시 다른 이들의 쉼을 위해 걷는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쉼터에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쉼터에 가면 가출 조희 후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이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탈출한 상황에서 본인의 위치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은 엄청난 위협의 문제였다. 그런데 쉼터의 이런 조치는 “원가정 복귀”를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유연하게 운영되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인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것이 정말 너무 이상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다.

나는 엑시트에서 활동하기 전에 장애인권단체에서 활동했다. 활동하는 내내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탈시설’이었다.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내 큰 인권침해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폐쇄적인 시설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운동이 진행됐다. 하지만 운동이 계속될수록 시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드러났다. 장애인운동이 주목했던 것은 시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설성이었다. 집단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진 기상·취침·식사 시간, 외출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당사자의 일상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을 종사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다.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채 살아가야 하고 매일 같은 사람들만 만나야 하는 시설에선 “시설병”에 걸리기 십상이었다. 종사자 역시 시설중심 복지체계의 피해자였다. 국가는 짠 비용으로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 내 반인권 상황을 묵인했다.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돌봄의 책임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종사자들이 감당해야 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정부는 시설의 소규모화를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권운동 진영은 ‘시설밖으로’ 라는 구호와 함께 탈시설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했다. 내가 만난 탈시설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무리 호텔처럼 좋아져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었다. 수십년을 산 곳이지만 한 번도 시설을 집이라 말하지 않고 “거기”로 호명했다. 시설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마로니에공원에서,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에서, 싸워야 하는 모든 곳에서 싸웠다. 이런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현재 전국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운동은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시도와 함께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거주시설은 닳아있다. 거주시설에 사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상상하면 그들에 대한 사회적 대접도 닳아있다. 장애인, 노인, 홀리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에 가시화되지 않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이들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서 사회적 보호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제한이어서는 안 된다. 자유가 제한된 곳에 존엄이 설 자리는 없다.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쉼터와 그룹홈 등 시설에서 지내보기를 제안할 때, 나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청소년은 시설에 들어가기 싫은 너무 명확하고 납득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도 거리는 너무 위험하고 갈 곳이 없으니 가서 좀 살아보자고 이야기해야 할 때, 이 제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또 거리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쉼터 종사자들은 어떠한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걸 알면서도 너무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누구를 위한 규칙인지도 모를 규칙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그 문제는 온전히 시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운영은 방어진일 수밖에 없다. 현장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엑시트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중 보육원을 중도에 퇴소한 이들이 늘고 있다. 그들이 말해주는 보육원에서의 경험들,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청소년 간 위계를 이용한 청소년 관리,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 등은 장애인거주시설과 너무 닮아있었다. 아동보육시설도 시설 내 인권 문제로 소규모화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시설 중심의 복지체계다. 중심을 바꿔야 한다. 여전히 시설은 너무 많고 시설당 아동·청소년의 수도 너무 많다. 정부는 보육 시설 내 인권침해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싶겠지만, 시설을 유지한 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 확인됐다. 보육원을 중도 퇴소한 이들은 보육원에서 겪은 일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간다. 살아남기 위해 절대 지지 않았어야 했고 약점을 드러내선 안됐던 그 시절의 상처를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 집이 필요하다.

엑시트는 종종 청소년들과 집을 구하러 다닌다. 고시원, 월세방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LH 청년매입임대와 같은 주거를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높은 월세와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집을 구하는 과정을 온전히 즐기지는 못한다. 그래도 이 과정 내내 이런저런 살 궁리를 하며 자신의 집을 준비하는 것에 즐거워한다. 그렇게 자신만의 집을 구하고 살다가 다시 연락이 온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관계망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 심리적 허기는 일상인 것 같다. 씻고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플 때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무언가를 실패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 안심시켜주고, 밖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괜찮다고 토닥여 줄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관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과 체계가 필요하다.

누구나에게 그러하듯 청소년들에게도 살만한 집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는 집이 될 수 없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적어도 엑시트는 우리가 만난 거리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와 그들이 당한 폭력의 원인들을 청소년 개인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 집은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당한 폭력은 하나같이 너무 부당했다. 원가정의 무너진 관계와 상황을 회복하고 보호자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너무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될 때까지 청소년들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현재 방식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걸 시대적 흐름이다. “원가정과 거리, 시설”이 아닌 개별 청소년의 삶의 역사와 필요에 맞는 집이 필요하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해야 한다.

“저는 자유를 원해요. 하지만 보호도 필요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유와 보호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나요? 저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호를 받으려면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요. (생략) 제가 원하는 보호는... 그냥 ‘너하고 싶은 거 다해’ 라고 말한다면 나한테는 밥과 집과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집, 아니면 집이 제공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같은 걸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선택지를 잘 제시해주시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보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 2019년 엑시트 언 영보고서, 청소년 강사단 글 중

## 보호시설의 의미, 보호시설의 딜레마, 보호시설을 넘어서<sup>87)</sup>

류수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 시설<sup>88)</sup>의 의미를 찾아서

한국 사회에서 시설의 존재는 비가시적이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사는 곳’, ‘가출청소년들이 가는 곳’,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 ‘장애인들을 돌보는 곳’ 등, 각각의 시설에 대한 흐릿한 인상만 존재할 뿐이다. 사람들은 시설을 혈연가정 밖의 존재들, 사회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종종 ‘봉사’하러 오는 곳, 혹은 ‘혐오/기피 대상’으로 여겨진다. 시설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역시 은폐되기 쉽다. 잊을만하면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가 기사화된다. 사회는 시설과 시설 거주자들을 편견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힘들다. 그렇다면 시설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공간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보호시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 보호시설의 계보를 탐색해들어가면 1950-1970년대의 “부녀보호정책”, “부랑인정책” 등과 만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일탈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게 “요보호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상’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관리하였다. 노동하거나 학습하거나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에 나와 있는 이들은 “부랑인”으로 범주화되어 역시 강제수용되었다. 이 시기의 보호 정책은 국가의 ‘정상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상인’으로부터 ‘비정상인’을 ‘보호’해낸다는 의미가 강하다.

1990년대,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성장은 기존의 보호정책의 프레임을 여성 권리의 문제로 변화시켰다. 보호는 정상 규범 밖을 벗어난 이들을 수용하는 행위가 아니며,

87) 이 글은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에서 발표한 류수민(201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개념을 재사유하기”를 토론문 형태로 수정, 요약한 것이다.

88) 2020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각각 시설의 설립취지, 운영주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이 글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서의 활동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보호대상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와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환으로 사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4년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제도화되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터는 피해생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설은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다.

시설은 정상 규범 바깥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시설은 ‘집’을 나올 수 없었던 이들에게 혈연가정 밖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열림터에서 생활하는/했던 대다수의 생활인<sup>89)</sup>들은 친족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다.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만 한다는 통념, 가족은 신성하고 깨지면 안 되는 곳이라는 통념은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폭력이 일어나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시설은 이들에게 ‘집’ 밖의 삶을 상상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2018년에 열림터에 입소했던 한 청소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입소를 문의하며 “침터가 있다는 걸 안 다음 (피해가 일어나던)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이지만 집이 아닌 장소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가족에 대한 통념을 깬다는 점이 시설의 의의이자, 시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다.

## 시설에서의 ‘보호’ 개념과 그 딜레마

대부분의 보호시설은 거주 공간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가령 열림터는 ‘생활’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활동가(실무자)가 생활인들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인 삶의 전반을 돌보며 생활 전반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보호시설은 생활인의 생활에 개입하면서 학교, 은행, 병원, 심리상담소 동행, 진로나 자립과정을 고민하며 준비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굵직한 사건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수다나 고민거리를 나누기도 한다. 이런 생활 전반에의 개입은 시설의 ‘보호’ 업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즉, 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거주공간과 보호업무가 공존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시설의 목적 중 하나인 ‘보호’는 시설의 한계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1950-70년대에 수용, 격리, 교화의 다른 말이었던 ‘보호’정책의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는 보호 받는 사람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원의 대상인 객체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주체들을 수동화하는 과정은 시설의 제도화에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

---

89) 열림터는 열림터 입소인들을 ‘생활인’이라고 부른다. ‘내담자’, ‘입소자’ 등의 여러 명칭을 거쳐 좀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단어를 택하고자 노력했고, 2009년 무렵 ‘열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생활인’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시설 입소인을 어떻게 지칭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생활인’, ‘시설 생활인’, ‘입소인’이란 단어를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국가가 시설을 보조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사회가 깊어져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종종 이 사회적 책무란 의미를 망각하고 시설을 일종의 ‘실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열림터 25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했던 열림터 25주년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포럼에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시설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시설에 신규 입소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기존 입소인을 퇴소시키라는 압박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90)</sup> 시설과 관련된 숫자를 성취로 파악할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과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무사고’에 대한 집착과도 직결된다. ‘무사고 시설’에 대한 국가의 은근한, 때로는 직접적인 압박은 시설과 시설 생활인들의 모험과 도전을 저해한다. 수용에 가까운 보호가 탄생하는 것이다.

시설 내부적으로 시설 생활인과 실무자 사이에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은 생활 규칙이다. 열림터 25주년 포럼을 위해 진행했던 기관방문에서 다수의 시설들이 휴대폰 규제나 귀가시간, 외박횟수, 프로그램 참여 등의 생활규칙으로 인한 고민을 공유해주었다.<sup>91)</sup> 열림터의 생활규칙은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하며, 피해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생활규칙은 때때로 보호대상 개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통제의 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 각 기관의 생활규칙이 목표하는 바가 ‘입소인의 시설 이탈 방지’나 ‘시설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은 아닌지에 대한 부단한 질문이 필요하다. 위험 예방을 위한 생활규칙들이 금지 조항으로 폐위

90) “우리 쉼터는 지금 신규생활인 수가 적은 편이다. 1년에 신규입소자가 3명이었던 때도 있었다. 신규생활인이 적은 것은 기존 식구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지자체에서는 반기지 않는 것 같다. 담당 사무관이 변경될 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지자체에서는 자립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생활인도 퇴소시키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 - A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류수민(201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개념을 재사유하기”,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pp.30.

91) “인권침해는 크건 작건 모든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활동가 입장에서는 생활인에게 매우 미안한 점이 많다. 나라면 이 시설에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른 쉼터 규칙을 그대로 썼는데, ‘절대’, ‘반드시’ 라는 항목이 아주 많았다. 최근에 생활인들과 함께 생활규칙을 바꾸었다. 규칙, 규율, 약속을 생활인과 함께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설에서는 생활인들이 먼저 규칙을 만든 후, 일단 한 번 해보고, 활동가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C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한 달에 한 번 공동체회의라는 것을 한다. 귀가시간은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미리 전화해서 늦는다고 고지할 경우 11시, 12시까지 귀가를 허용하고 있다. 주말에는 외박을 허용하고, 주중 외박은 월 2회 허용한다. 과거에 생활규칙 위반에 대해 용돈 제한이나 휴대폰 제한 등의 룰을 적용시켜 보았지만, 크게 소용없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판단해 그런 종류의 벌칙을 없었다. 최근에는 전체 합의를 어길 시 생활인들과 다 같이 벌칙을 고민해보고 있다. - D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귀가시간은 10시이지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11시까지 귀가하도록 한다. 취침 시간은 따로 없다. 11시에 휴대폰을 걷었는데 인권 문제이기도 해서 걷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 생활규칙은 자유로운 편인데도 생활인들은 힘들다고 한다. 예전에 열림터에서 우리 시설로 온 △△은, 열림터는 너무 좋는데 귀가시간과 벌칙 때문에 사람을 답답하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 E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위의 글 pp.32-33.

지는 것 역시 문제적이다.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금지하는 규칙은 시설 생활인들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위험을 감수해보더라도 어떤 선택을 해볼 수 있다. 이때 시설의 역할은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 위험을 직면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어야 한다.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이 위험을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작업이야말로 보호를 확장시키는 것에 가깝다.

실무자와 입소인이 맺는 관계 역시 시설이 겪는 딜레마다. 보호시설의 구조 속에서 활동가와 생활인은 서로 보호자와 보호받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보호 받는 자와 보호하는 자간의 권력 관계는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가령 열림터는 생활인에게 주거, 식사, 의류를 제공하며, 사건지원을 포함하여 문화, 학교학습, 자립, 의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처럼 시설은 시설 생활인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시설과 입소인 간의 위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 위계는 입소인이 실무자에게 눈치보게 만들기도 하고, 갈등상황에서 스스로 시설을 나가게 하거나, 강제퇴소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을 '복지서비스 소비자'로 설정하는 입소인도 존재한다. '소비자'로서의 관계 설정은 입소인과 활동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순간적으로 역전시킨다. 하지만 생활인이 서비스만을 제공받길 원할 때, 시설이라는 공간은 시설 생활인 주도의 장소가 아니게 된다. 역으로 활동가가 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담자의 삶을 살피는 돌봄의 작업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 위기를 당면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 시설은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시설 생활인의 생활 전반을 보살필 수 있다. 보살핌은 곧 시설 생활인이 사회 속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보호'와 관련된 위계와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설 생활인의 권한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열림터의 경우 활동가와 생활인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변화를 빚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시설이라는 존재 양식이 가진 딜레마를 분명히 인지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 보호 개념의 전환과 시설을 넘는 상상

'보호'는 '권리'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보호는 피해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매김하기도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사유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피해생존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장과 역량 강화로 기능하기도 한다. 누군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특정한 관점이 반영된 행위이며, 그 관점에 따라 보호의 방식과 내용도 달라진다. 상호 돌봄과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만드는 보호 역시 가능한 것이다.

돌봄과 보살핌에 관한 여성주의 논의를 이끈 커테이(2016)는 의존은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라고 논의한다.<sup>92)</sup> 취약한 이들과 그를 돌보는 이 사이에서 권력의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92) 에바 페더 커테이(2016),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당연하다. 하지만 권력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불평등한 조건을 직시하되, 계속해서 위계를 지양하고 상호호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보호 개념을 전환하며 시설의 운동성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의존/돌봄/보살핌이 보호시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이 가부장적 구조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듯이, 위기를 겪는 이들의 삶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은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균실을 만들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연결망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보살핌의 정책이 꼭 '보호시설'의 형태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처럼 주거를 제공하는 것 역시 사회가 행할 수 있는 돌봄의 한 가지 방식이다. 특정한 이들의 주거와 생활이 '보호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이들의 존재를 은폐하고, 더 적극적인 기반 마련을 저해한다.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다양하게 만드는 작업은 시설 안팎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시설의 존재를 더욱 드러내고, 시설 거주 생활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자. 그리고 시설을 넘어, 시설 밖에서도 모든 이들이 적절한 돌봄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 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발간일 2020년 2월 11일**

**문 의 02 522 7935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재단법인 동천, 한국도시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권리로서의 청소년 주거에 대해 고민하며 2019년에 청소년 현장기관과 관련 단체의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들꽃청소년세상(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 자립팜 이상한 나라), 안산YWCA여성과 성상담소,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청소년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띠동, 인권교육센터 들,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함께걷는아이들이 함께하였습니다.(2019년 기준) 본 보고서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1년 동안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의 결과물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